

# 마곡지구 9단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안내사항

- 마곡지구 9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리를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분양의 경우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 방문은 긴급적 자제해주시고, 방문시 방문인원은 최소화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는 경우

## 알려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콜센터(1600-3456)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으로, 본인의 청약자격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2.26.(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자격조건외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공고문은 경향신문, 한겨레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 증으로 서울시민의 질병감염예방을 위해 견본주택 현장을 공개하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사이버 견본주택(www.i-sh.c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공급 관련 팸플릿은 2020.2.26.(수) 13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분양수납부에서 배부하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자 팸플릿은 2020.2.26.(수) 13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팸플릿은 한정된 수량으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 해당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공공주택 특별법」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이며 재당첨제한(5년) 적용주택입니다.
- 마곡지구는 향후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 사업추진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금회 분양단지를 포함한 단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94호, 2019.09.15.)에 의거 건축공정률 60%를 초과한 이후에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마이너스오피스제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중 하나에 해당하여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최하층을 우선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4층인 주택이 있음) 고령자 세대 및 장애인 세대와 3명 이상 미성년 자녀의 세대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세대, 장애인 세대에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분양되는 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고(1세대 2인 이상이 청약시 중복당첨항목을 참고하시기바람.),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일반분양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시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b>■ 공급신청 자격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호)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외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li> </ul>
<b>■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본 공고문에서 '세대에 속한 자'라 함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시: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p>“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b>■ 주택 및 분양권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의2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li> <li>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등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li> <li>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li> </ul>

- 재당첨제한 대상주택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분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분은 금회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제1항에 따른 해당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에 대하여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청약자격(거주지역,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소득·자산요건,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사에서 전산검색,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청약자격을 확인한 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기간에 해당 청약자격이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공급유형별, 순위별 청약접수방법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및 접수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의 「주택형」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 내에서 공급유형별, 향별, 층별, 동별 구분 없이 무작위로 추정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
- 특별 및 일반공급(제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로 전산관리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는 거주지·연락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주민등록표등본·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름 및 연락처 기재, FAX 02-3410-7515 발송 후 전화확인) 주소 및 연락처 변동사항 미고지로 인한 공급대상 제외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타인 명의의 가입된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해제)되고,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불법행위 이익의 3배 금액이 3천만원 초과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주택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체결 후 「주택법」제65조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 계약취소(해제)되는 경우 주택분양계약에서 규정한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li> <li>·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라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명단관리 됩니다.</li> <li>·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li> </ul>

-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주택소유 여부, 재당첨 여부, 자산·소득 등의 확인을 위하여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주택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에 필요한 제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 및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 금회 청약에 사용하는 입주자저축 계좌를 청약신청 이후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로 인해 청약사실 누락 또는 순위확인이 발급불가로 당첨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까지 계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회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03.25.)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됨. 또한 전매 제한기간 내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소유권에 관기에 부기등기되며,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단, 「주택법 시행령」(별표3)의 4(제73조 제1항 관련)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li> <li>■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포함)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그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지 않는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ul>

※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매제한 기간 및 입주의무, 거주의무 일람표							
지구	단지	전용면적(㎡)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전매제한기간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의무기간	거주의무기간
마곡 (도시개발사업)	9	59	2020.03.25.	10년	2021.02.16. (예정)	-	-
		84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관련 법령 및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르며,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01 사업주체, 건설위치, 시공업체 및 감리회사명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지구 및 단지	건설위치	건설현황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	감리회사 및 금액	난방방식
			계	분양	임대			
서울주택도시공사 (218-82-00136)	마곡 도시개발 사업지구 9단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4	1,529	962	567	한신공영(주) (114-81-04605)  삼환기업(주) (101-81-00452)  대진공무(주) (206-81-49731)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주)팜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신화에프이원  총 : 9,624,645,980원	지역 난방

## 02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공급세대수

### I 공급대상 I

지구	단지	주택 유형	분양주택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발코니 유형	평면 유형	세대별 주택공급면적(m)						세대 별 대지 면적 (m)	분양 건설 세대 수	분양세대수								최고 층수	1층 배정 세대 수	
							공급면적(A)		그밖의 공용면적(B)						계	특별분양									
							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				소계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 부부	생애 최초	기타 (기타 추천 등)	일반 분양			
마곡 지구	9 단지	민 간	2020000001-01	059.0000H	확장		계						962	433	315	43	21	130	87	34	118	16	32		
							59A	83.93	59.86	24.07	3.26	44.12	131.31											37.4	328
							59B	83.77	59.94	23.83	3.26	44.17	131.2											37.45	11
							59C	83.72	59.82	23.9	3.25	44.09	131.06											37.38	17
							59C2	83.72	59.82	23.9	3.25	44.09	131.06											37.38	30
							59D	84.07	59.89	24.18	3.26	44.14	131.47											37.42	17
							59D2	84.07	59.89	24.18	3.26	44.14	131.47											37.42	30
							84A	117.35	84.85	32.5	4.63	62.53	184.51											53.02	86
							84B	118.07	84.96	33.11	4.63	62.62	185.32											53.08	12
			84C	117.63	84.96	32.67	4.63	62.62	184.88	53.08	60														
			84D	117.61	84.65	32.96	4.61	62.39	184.61	52.89	214														
			84E	117.89	84.97	32.92	4.63	62.62	185.14	53.09	77														
			84G	117.67	84.91	32.76	4.63	62.58	184.88	53.05	28														
			84D2	117.77	84.54	33.23	4.6	62.31	184.68	52.82	27														
			84F	117.91	84.89	33.02	4.63	62.56	185.1	53.04	25														
			2020000001-02	084.0000H	확장					477	355	48	24	143	95	45	122	16	33						
			2020000001-03	084.0000N	비확장					52	40	5	3	15	10	7	12	16	4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마곡지구 9단지				
	059.0000H	084.0000H	084.0000N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7	6	2	15
	장애인	4	2	1	7
	의사상자	4	2	1	7
	다문화가족	4	2	1	7
	북한이탈주민	4	2	1	7
	중소기업 근로자	4	2	1	7
철거민	7	29	-	3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3	48	5	9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1	24	3	48	
신혼부부 특별공급	130	143	15	288	
생애최초 특별공급	87	95	10	192	
합계	315	355	40	710	

- 기타공용면적은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 증감이 없는 것으로 봄
- 위 공급대상의 '평면유형'은 청약신청자의 팸플릿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최고층수는 공급대상 주택형의 최고층수를 표시한 것임(동·호수는 팸플릿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 평면유형 내에 설치되는 면적(발코니 면적 등 포함)은 세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수 조정 등에 따른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음(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sup>2</sup>×0.3025 또는 m<sup>2</sup>÷3.3058)
- 청약신청은 주택형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각 주택형별 평면유형은 청약자가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로 배정 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 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됨.
- 동·호수는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평면유형, 동, 층, 향, 신청순위에 관계없이 한국감정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됨.

## 03 분양주택가격 및 납부방법

### I 세대별 주택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I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 금액이며, 주택가격은 평면유형, 층, 향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가격으로 세대별 주택가격이 다를 수 있음. 충분한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본 주택가격에는 각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본 주택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금액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 금회 공급하는 마곡지구 9단지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59m<sup>2</sup>는 전세대가, 전용면적 84m<sup>2</sup>는 확장형이 477세대로 주방, 침실 등의 발코니 확장여부는 단위세대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람.(비확장형은 52세대임)
- 발코니 확장형 세대에 당첨이 되시면 주택가격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래 표에서 잔금은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된 금액임(전용면적 59m<sup>2</sup>만 해당되며, 전용면적84m<sup>2</sup>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음)
- 입주금(주택가격)의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발코니확장 잔금 포함)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발코니확장비용 잔금포함)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한 열쇠불출이 불가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입주금은 아래의 순서로 수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① 계약금    ② 발코니확장 계약금    ③ 중도금    ④ 잔금    ⑤ 발코니확장 잔금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총·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고에 해당하는 총·호수를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음.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분양가격, 발코니확장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주택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01	201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01	202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01	203	084.0000N	84D2	646,605	96,990	96,990	96,990	64,660	290,975	-
901	204	084.0000N	84F	648,232	97,234	97,234	97,234	64,823	291,707	-
901	301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01	302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01	303	084.0000N	84D2	646,605	96,990	96,990	96,990	64,660	290,975	-
901	304	084.0000N	84F	648,232	97,234	97,234	97,234	64,823	291,707	-
901	401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01	402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01	403	084.0000N	84D2	646,605	96,990	96,990	96,990	64,660	290,975	-
901	404	084.0000N	84F	648,232	97,234	97,234	97,234	64,823	291,707	-
901	501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01	502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01	503	084.0000N	84D2	646,605	96,990	96,990	96,990	64,660	290,975	-
901	504	084.0000N	84F	659,739	98,960	98,960	98,960	65,973	296,886	-
901	601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01	602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01	603	084.0000N	84D2	658,112	98,716	98,716	98,716	65,811	296,153	-
901	604	084.0000N	84F	659,739	98,960	98,960	98,960	65,973	296,886	-
901	701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01	702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01	703	084.0000N	84D2	658,112	98,716	98,716	98,716	65,811	296,153	-
901	704	084.0000N	84F	659,739	98,960	98,960	98,960	65,973	296,886	-
901	801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03	604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3	701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3	702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3	703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3	704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3	801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3	802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3	803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3	804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3	901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3	902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3	903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3	904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3	1001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3	1002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3	1003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3	1004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3	1101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3	1102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3	1103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3	1104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3	12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3	12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3	1203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3	1204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3	13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3	13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3	1303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3	1304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3	14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3	14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3	15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3	15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3	16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3	16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4	104	084.0000H	84A	648,084	97,212	97,212	97,212	64,808	291,640	5,759,600
904	105	084.0000H	84C	634,144	95,121	95,121	95,121	63,414	285,367	4,574,900
904	106	084.0000H	84C	634,144	95,121	95,121	95,121	63,414	285,367	4,574,900
904	204	084.0000H	84A	659,591	98,938	98,938	98,938	65,959	296,818	5,759,600
904	205	084.0000H	84C	648,528	97,279	97,279	97,279	64,852	291,839	4,574,900
904	206	084.0000H	84C	648,528	97,279	97,279	97,279	64,852	291,839	4,574,900
904	303	084.0000H	84A	659,591	98,938	98,938	98,938	65,959	296,818	5,759,600
904	304	084.0000H	84A	659,591	98,938	98,938	98,938	65,959	296,818	5,759,600
904	305	084.0000H	84C	660,035	99,005	99,005	99,005	66,003	297,017	4,574,900
904	306	084.0000H	84C	660,035	99,005	99,005	99,005	66,003	297,017	4,574,900
904	403	084.0000H	84A	659,591	98,938	98,938	98,938	65,959	296,818	5,759,600
904	404	084.0000H	84A	659,591	98,938	98,938	98,938	65,959	296,818	5,759,600
904	405	084.0000H	84C	660,035	99,005	99,005	99,005	66,003	297,017	4,574,900
904	406	084.0000H	84C	660,035	99,005	99,005	99,005	66,003	297,017	4,574,900
904	503	084.0000H	84A	671,098	100,664	100,664	100,664	67,109	301,997	5,759,6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04	504	084.0000H	84A	671,098	100,664	100,664	100,664	67,109	301,997	5,759,600
904	505	084.0000H	84C	660,035	99,005	99,005	99,005	66,003	297,017	4,574,900
904	506	084.0000H	84C	660,035	99,005	99,005	99,005	66,003	297,017	4,574,900
904	603	084.0000H	84A	671,098	100,664	100,664	100,664	67,109	301,997	5,759,600
904	604	084.0000H	84A	671,098	100,664	100,664	100,664	67,109	301,997	5,759,600
904	605	084.0000H	84C	671,542	100,731	100,731	100,731	67,154	302,195	4,574,900
904	606	084.0000H	84C	671,542	100,731	100,731	100,731	67,154	302,195	4,574,900
904	703	084.0000H	84A	679,728	101,959	101,959	101,959	67,972	305,879	5,759,600
904	704	084.0000H	84A	679,728	101,959	101,959	101,959	67,972	305,879	5,759,600
904	705	084.0000H	84C	671,542	100,731	100,731	100,731	67,154	302,195	4,574,900
904	706	084.0000H	84C	671,542	100,731	100,731	100,731	67,154	302,195	4,574,900
904	803	084.0000H	84A	679,728	101,959	101,959	101,959	67,972	305,879	5,759,600
904	804	084.0000H	84A	679,728	101,959	101,959	101,959	67,972	305,879	5,759,600
904	805	084.0000H	84C	671,542	100,731	100,731	100,731	67,154	302,195	4,574,900
904	806	084.0000H	84C	671,542	100,731	100,731	100,731	67,154	302,195	4,574,900
904	903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904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905	084.0000H	84C	680,172	102,025	102,025	102,025	68,017	306,080	4,574,900
904	906	084.0000H	84C	680,172	102,025	102,025	102,025	68,017	306,080	4,574,900
904	1003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1004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1005	084.0000H	84C	680,172	102,025	102,025	102,025	68,017	306,080	4,574,900
904	1006	084.0000H	84C	680,172	102,025	102,025	102,025	68,017	306,080	4,574,900
904	1103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1104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1105	084.0000H	84C	680,172	102,025	102,025	102,025	68,017	306,080	4,574,900
904	1106	084.0000H	84C	680,172	102,025	102,025	102,025	68,017	306,080	4,574,900
904	1203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1204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1205	084.0000H	84C	688,802	103,320	103,320	103,320	68,880	309,962	4,574,900
904	1206	084.0000H	84C	688,802	103,320	103,320	103,320	68,880	309,962	4,574,900
904	1303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1304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1305	084.0000H	84C	688,802	103,320	103,320	103,320	68,880	309,962	4,574,900
904	1306	084.0000H	84C	688,802	103,320	103,320	103,320	68,880	309,962	4,574,900
904	1403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1404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1405	084.0000H	84C	688,802	103,320	103,320	103,320	68,880	309,962	4,574,900
904	1406	084.0000H	84C	688,802	103,320	103,320	103,320	68,880	309,962	4,574,900
904	1503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1504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4	1505	084.0000H	84C	688,802	103,320	103,320	103,320	68,880	309,962	4,574,900
904	1506	084.0000H	84C	688,802	103,320	103,320	103,320	68,880	309,962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06	404	059.0000H	59C	496,519	74,477	74,477	74,477	49,651	223,437	3,773,000
906	405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06	406	059.0000H	59B	488,305	73,245	73,245	73,245	48,830	219,740	4,004,000
906	407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06	501	059.0000H	59D2	496,833	74,524	74,524	74,524	49,683	223,578	3,886,300
906	502	059.0000H	59C2	496,519	74,477	74,477	74,477	49,651	223,437	3,773,000
906	503	059.0000H	59D2	496,833	74,524	74,524	74,524	49,683	223,578	3,886,300
906	504	059.0000H	59C2	496,519	74,477	74,477	74,477	49,651	223,437	3,773,000
906	505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06	506	059.0000H	59B	488,305	73,245	73,245	73,245	48,830	219,740	4,004,000
906	507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06	601	059.0000H	59D2	496,833	74,524	74,524	74,524	49,683	223,578	3,886,300
906	602	059.0000H	59C2	496,519	74,477	74,477	74,477	49,651	223,437	3,773,000
906	603	059.0000H	59D2	496,833	74,524	74,524	74,524	49,683	223,578	3,886,300
906	604	059.0000H	59C2	496,519	74,477	74,477	74,477	49,651	223,437	3,773,000
906	605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06	606	059.0000H	59B	497,068	74,560	74,560	74,560	49,706	223,682	4,004,000
906	607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06	701	059.0000H	59C	505,282	75,792	75,792	75,792	50,528	227,378	3,773,000
906	702	059.0000H	59D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4,175,600
906	703	059.0000H	59C	505,282	75,792	75,792	75,792	50,528	227,378	3,773,000
906	704	059.0000H	59D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4,175,600
906	705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6	706	059.0000H	59B	497,068	74,560	74,560	74,560	49,706	223,682	4,004,000
906	707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6	801	059.0000H	59C2	505,282	75,792	75,792	75,792	50,528	227,378	3,773,000
906	802	059.0000H	59D2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3,886,300
906	803	059.0000H	59C2	505,282	75,792	75,792	75,792	50,528	227,378	3,773,000
906	804	059.0000H	59D2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3,886,300
906	805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6	806	059.0000H	59B	497,068	74,560	74,560	74,560	49,706	223,682	4,004,000
906	807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6	901	059.0000H	59C2	505,282	75,792	75,792	75,792	50,528	227,378	3,773,000
906	902	059.0000H	59D2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3,886,300
906	903	059.0000H	59C2	505,282	75,792	75,792	75,792	50,528	227,378	3,773,000
906	904	059.0000H	59D2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3,886,300
906	905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6	906	059.0000H	59B	505,831	75,874	75,874	75,874	50,583	227,626	4,004,000
906	907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6	1001	059.0000H	59D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4,175,600
906	1002	059.0000H	59C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6	1003	059.0000H	59D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4,175,600
906	1004	059.0000H	59C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6	1005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6	1006	059.0000H	59B	505,831	75,874	75,874	75,874	50,583	227,626	4,004,000
906	1007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6	1101	059.0000H	59D2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3,886,300
906	1102	059.0000H	59C2	505,282	75,792	75,792	75,792	50,528	227,378	3,773,000
906	1103	059.0000H	59D2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3,886,300
906	1104	059.0000H	59C2	505,282	75,792	75,792	75,792	50,528	227,378	3,773,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06	1105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6	1106	059.0000H	59B	505,831	75,874	75,874	75,874	50,583	227,626	4,004,000
906	1107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6	1201	059.0000H	59D2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3,886,300
906	1202	059.0000H	59C2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6	1203	059.0000H	59D2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3,886,300
906	1204	059.0000H	59C2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6	1205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6	1206	059.0000H	59B	505,831	75,874	75,874	75,874	50,583	227,626	4,004,000
906	1207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6	1301	059.0000H	59C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6	1302	059.0000H	59D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4,175,600
906	1303	059.0000H	59C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6	1304	059.0000H	59D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4,175,600
906	1305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6	1306	059.0000H	59B	505,831	75,874	75,874	75,874	50,583	227,626	4,004,000
906	1307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6	1401	059.0000H	59C2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6	1402	059.0000H	59D2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3,886,300
906	1403	059.0000H	59C2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6	1404	059.0000H	59D2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3,886,300
906	1405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6	1406	059.0000H	59B	505,831	75,874	75,874	75,874	50,583	227,626	4,004,000
906	1407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7	201	059.0000H	59C	487,756	73,163	73,163	73,163	48,775	219,492	3,773,000
907	202	059.0000H	59D	488,070	73,210	73,210	73,210	48,807	219,633	4,175,600
907	301	059.0000H	59C2	487,756	73,163	73,163	73,163	48,775	219,492	3,773,000
907	302	059.0000H	59D2	488,070	73,210	73,210	73,210	48,807	219,633	3,886,300
907	401	059.0000H	59C2	487,756	73,163	73,163	73,163	48,775	219,492	3,773,000
907	402	059.0000H	59D2	488,070	73,210	73,210	73,210	48,807	219,633	3,886,300
907	501	059.0000H	59D	496,833	74,524	74,524	74,524	49,683	223,578	4,175,600
907	502	059.0000H	59C	496,519	74,477	74,477	74,477	49,651	223,437	3,773,000
907	503	059.0000H	59D	496,833	74,524	74,524	74,524	49,683	223,578	4,175,600
907	504	059.0000H	59C	496,519	74,477	74,477	74,477	49,651	223,437	3,773,000
907	601	059.0000H	59D2	496,833	74,524	74,524	74,524	49,683	223,578	3,886,300
907	602	059.0000H	59C2	496,519	74,477	74,477	74,477	49,651	223,437	3,773,000
907	603	059.0000H	59D2	496,833	74,524	74,524	74,524	49,683	223,578	3,886,300
907	604	059.0000H	59C2	496,519	74,477	74,477	74,477	49,651	223,437	3,773,000
907	701	059.0000H	59D2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3,886,300
907	702	059.0000H	59C2	505,282	75,792	75,792	75,792	50,528	227,378	3,773,000
907	703	059.0000H	59D2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3,886,300
907	704	059.0000H	59C2	505,282	75,792	75,792	75,792	50,528	227,378	3,773,000
907	801	059.0000H	59C	505,282	75,792	75,792	75,792	50,528	227,378	3,773,000
907	802	059.0000H	59D	505,596	75,839	75,839	75,839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07	1001	059.0000H	59C2	505,282	75,792	75,792	75,792	50,528	227,378	3,773,000
907	1002	059.0000H	59D2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3,886,300
907	1003	059.0000H	59C2	505,282	75,792	75,792	75,792	50,528	227,378	3,773,000
907	1004	059.0000H	59D2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3,886,300
907	1101	059.0000H	59D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4,175,600
907	1102	059.0000H	59C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7	1103	059.0000H	59D	505,596	75,839	75,839	75,839	50,559	227,520	4,175,600
907	1104	059.0000H	59C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7	1201	059.0000H	59D2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3,886,300
907	1202	059.0000H	59C2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7	1203	059.0000H	59D2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3,886,300
907	1204	059.0000H	59C2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7	1301	059.0000H	59D2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3,886,300
907	1302	059.0000H	59C2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7	1303	059.0000H	59D2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3,886,300
907	1304	059.0000H	59C2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7	1401	059.0000H	59C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7	1402	059.0000H	59D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4,175,600
907	1403	059.0000H	59C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7	1404	059.0000H	59D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4,175,600
907	1501	059.0000H	59C2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7	1502	059.0000H	59D2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3,886,300
907	1503	059.0000H	59C2	511,854	76,778	76,778	76,778	51,185	230,335	3,773,000
907	1504	059.0000H	59D2	512,168	76,825	76,825	76,825	51,216	230,477	3,886,300
908	201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08	202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08	203	084.0000H	84B	660,035	99,005	99,005	99,005	66,003	297,017	4,669,500
908	204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08	301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08	302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08	303	084.0000H	84B	660,035	99,005	99,005	99,005	66,003	297,017	4,669,500
908	304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08	401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08	402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08	403	084.0000H	84B	660,035	99,005	99,005	99,005	66,003	297,017	4,669,500
908	404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08	501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8	502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8	503	084.0000H	84B	671,542	100,731	100,731	100,731	67,154	302,195	4,669,500
908	504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08	601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8	602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8	603	084.0000H	84B	671,542	100,731	100,731	100,731	67,154	302,195	4,669,500
908	604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08	701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8	702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8	703	084.0000H	84B	680,172	102,025	102,025	102,025	68,017	306,080	4,669,500
908	704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08	801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8	802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08	803	084.0000H	84B	680,172	102,025	102,025	102,025	68,017	306,080	4,669,500
908	804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08	9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8	9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8	903	084.0000H	84B	688,802	103,320	103,320	103,320	68,880	309,962	4,669,500
908	9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08	10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8	10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8	1003	084.0000H	84B	688,802	103,320	103,320	103,320	68,880	309,962	4,669,500
908	10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08	11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8	11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8	1103	084.0000H	84B	688,802	103,320	103,320	103,320	68,880	309,962	4,669,500
908	11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08	12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8	12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8	1203	084.0000H	84B	688,802	103,320	103,320	103,320	68,880	309,962	4,669,500
908	12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08	13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8	13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8	1303	084.0000H	84B	688,802	103,320	103,320	103,320	68,880	309,962	4,669,500
908	13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08	14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8	14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8	15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8	15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9	104	059.0000H	59A	476,959	71,543	71,543	71,543	47,695	214,635	3,898,400
909	105	059.0000H	59A	476,959	71,543	71,543	71,543	47,695	214,635	3,898,400
909	204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09	205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09	302	084.0000H	84A	659,591	98,938	98,938	98,938	65,959	296,818	5,759,600
909	303	084.0000H	84A	659,591	98,938	98,938	98,938	65,959	296,818	5,759,600
909	304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09	305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09	402	084.0000H	84A	671,098	100,664	100,664	100,664	67,109	301,997	5,759,600
909	403	084.0000H	84A	671,098	100,664	100,664	100,664	67,109	301,997	5,759,600
909	404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09	405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09	502	084.0000H	84A	679,728	101,959	101,959	101,959	67,972	305,879	5,759,600
909	503	084.0000H	84A	679,728	101,959	101,959	101,959	67,972	305,879	5,759,600
909	504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9	505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09	602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9	603	084.0000H	84A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09	802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9	803	084.0000H	84A	688,358	103,253	103,253	103,253	68,835	309,764	5,759,600
909	804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9	805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09	902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903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904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9	905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9	1002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003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004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9	1005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9	1102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103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104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9	1105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09	1202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203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2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9	1205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9	1302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303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3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9	1305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9	1402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403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4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9	1405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9	1502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503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5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9	1505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9	1602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603	084.0000H	84A	696,988	104,548	104,548	104,548	69,698	313,646	5,759,600
909	16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09	1605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0	205	084.0000H	84E	660,109	99,016	99,016	99,016	66,010	297,051	5,437,300
910	301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10	302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10	303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10	304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10	305	084.0000H	84E	671,616	100,742	100,742	100,742	67,161	302,229	5,437,300
910	401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0	402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0	403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0	404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0	405	084.0000H	84E	671,616	100,742	100,742	100,742	67,161	302,229	5,437,300
910	501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0	502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0	503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10	504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0	505	084.0000H	84E	680,246	102,036	102,036	102,036	68,024	306,114	5,437,300
910	601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0	602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0	603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0	604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0	605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0	701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0	702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0	703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0	7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0	705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0	801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0	802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0	803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0	8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0	805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0	901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0	902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0	903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0	9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0	9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0	1001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0	1002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0	1003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0	10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0	10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0	1101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0	1102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0	1103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0	11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0	11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0	12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0	12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0	12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0	1204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0	12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0	13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0	13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0	13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0	1304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0	13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0	14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10	1504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0	15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0	16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0	1604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0	16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1	102	059.0000H	59A	476,959	71,543	71,543	71,543	47,695	214,635	3,898,400
911	105	084.0000H	84E	648,602	97,290	97,290	97,290	64,860	291,872	5,437,300
911	202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11	205	084.0000H	84E	660,109	99,016	99,016	99,016	66,010	297,051	5,437,300
911	301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11	302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1	303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1	304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1	305	084.0000H	84E	671,616	100,742	100,742	100,742	67,161	302,229	5,437,300
911	401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1	402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1	403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1	404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1	405	084.0000H	84E	671,616	100,742	100,742	100,742	67,161	302,229	5,437,300
911	501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1	502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1	503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1	5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1	505	084.0000H	84E	680,246	102,036	102,036	102,036	68,024	306,114	5,437,300
911	601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1	602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1	603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1	6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1	605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1	701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1	702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1	703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1	704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1	705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1	801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1	802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1	803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1	804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1	805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1	9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1	9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1	9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904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9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1	10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1	10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1	10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004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0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1	11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11	11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1	11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104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1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1	12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1	12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1	12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204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2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1	13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1	13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1	13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304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3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1	14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1	14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1	14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404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4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1	15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1	15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1	15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504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5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1	16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1	16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1	16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604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1	16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2	105	084.0000H	84E	648,602	97,290	97,290	97,290	64,860	291,872	5,437,300
912	205	084.0000H	84E	660,109	99,016	99,016	99,016	66,010	297,051	5,437,300
912	301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12	302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12	303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2	304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2	305	084.0000H	84E	671,616	100,742	100,742	100,742	67,161	302,229	5,437,300
912	401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2	402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2	403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2	404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2	405	084.0000H	84E	671,616	100,742	100,742	100,742	67,161	302,229	5,437,300
912	501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2	502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2	503	084.0000H	84D	670,137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12	605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2	701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2	702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2	703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2	7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2	705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2	801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2	802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2	803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2	804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2	805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2	9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2	9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2	9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2	904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2	9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2	10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2	10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2	10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2	1004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2	10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2	1101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2	1102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2	11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2	1104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2	11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2	12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2	12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2	12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2	1204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2	12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2	13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2	13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2	13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2	1304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2	13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2	14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2	14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2	14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2	1404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2	14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2	15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2	15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2	15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2	1504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2	15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2	1601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2	1602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2	1603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2	1604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12	1605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3	104	084.0000H	84E	648,602	97,290	97,290	97,290	64,860	291,872	5,437,300
913	204	084.0000H	84E	660,109	99,016	99,016	99,016	66,010	297,051	5,437,300
913	301	084.0000H	84E	660,109	99,016	99,016	99,016	66,010	297,051	5,437,300
913	302	084.0000H	84G	659,813	98,971	98,971	98,971	65,981	296,919	4,364,800
913	303	084.0000H	84G	659,813	98,971	98,971	98,971	65,981	296,919	4,364,800
913	304	084.0000H	84E	660,109	99,016	99,016	99,016	66,010	297,051	5,437,300
913	401	084.0000H	84E	671,616	100,742	100,742	100,742	67,161	302,229	5,437,300
913	402	084.0000H	84G	659,813	98,971	98,971	98,971	65,981	296,919	4,364,800
913	403	084.0000H	84G	659,813	98,971	98,971	98,971	65,981	296,919	4,364,800
913	404	084.0000H	84E	671,616	100,742	100,742	100,742	67,161	302,229	5,437,300
913	501	084.0000H	84E	671,616	100,742	100,742	100,742	67,161	302,229	5,437,300
913	502	084.0000H	84G	659,813	98,971	98,971	98,971	65,981	296,919	4,364,800
913	503	084.0000H	84G	671,320	100,698	100,698	100,698	67,132	302,094	4,364,800
913	504	084.0000H	84E	680,246	102,036	102,036	102,036	68,024	306,114	5,437,300
913	601	084.0000H	84E	680,246	102,036	102,036	102,036	68,024	306,114	5,437,300
913	602	084.0000H	84G	671,320	100,698	100,698	100,698	67,132	302,094	4,364,800
913	603	084.0000H	84G	671,320	100,698	100,698	100,698	67,132	302,094	4,364,800
913	604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701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702	084.0000H	84G	671,320	100,698	100,698	100,698	67,132	302,094	4,364,800
913	703	084.0000H	84G	679,950	101,992	101,992	101,992	67,995	305,979	4,364,800
913	704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801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802	084.0000H	84G	671,320	100,698	100,698	100,698	67,132	302,094	4,364,800
913	803	084.0000H	84G	679,950	101,992	101,992	101,992	67,995	305,979	4,364,800
913	804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901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902	084.0000H	84G	679,950	101,992	101,992	101,992	67,995	305,979	4,364,800
913	903	084.0000H	84G	688,580	103,287	103,287	103,287	68,858	309,861	4,364,800
913	904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1001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1002	084.0000H	84G	679,950	101,992	101,992	101,992	67,995	305,979	4,364,800
913	1003	084.0000H	84G	688,580	103,287	103,287	103,287	68,858	309,861	4,364,800
913	1004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1101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1102	084.0000H	84G	679,950	101,992	101,992	101,992	67,995	305,979	4,364,800
913	1103	084.0000H	84G	688,580	103,287	103,287	103,287	68,858	309,861	4,364,800
913	1104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1201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1202	084.0000H	84G	688,580	103,287	103,287	103,287	68,858	309,861	4,364,800
913	1203	084.0000H	84G	688,580	103,287	103,287	103,287	68,858	309,861	4,364,800
913	1204	084.0000H	84E	697,506	104,625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13	1404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3	1501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1502	084.0000H	84G	688,580	103,287	103,287	103,287	68,858	309,861	4,364,800
913	1503	084.0000H	84G	688,580	103,287	103,287	103,287	68,858	309,861	4,364,800
913	1504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3	1601	084.0000H	84E	688,876	103,331	103,331	103,331	68,887	309,996	5,437,300
913	1602	084.0000H	84G	688,580	103,287	103,287	103,287	68,858	309,861	4,364,800
913	1603	084.0000H	84G	688,580	103,287	103,287	103,287	68,858	309,861	4,364,800
913	1604	084.0000H	84E	697,506	104,625	104,625	104,625	69,750	313,881	5,437,300
915	101	084.0000H	84D	632,739	94,910	94,910	94,910	63,273	284,736	4,180,000
915	102	084.0000H	84D	632,739	94,910	94,910	94,910	63,273	284,736	4,180,000
915	103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15	104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15	201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15	202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15	203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5	204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5	301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5	302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5	303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5	304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5	401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5	402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5	403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5	404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5	501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5	502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5	503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5	504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5	601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5	602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5	603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5	604	059.0000H	59A	512,011	76,801	76,801	76,801	51,201	230,407	3,898,400
915	701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5	702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5	703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5	704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5	801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5	802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5	803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5	804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5	901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5	902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5	9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9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001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5	1002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5	10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0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101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15	1102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5	11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1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201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5	1202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5	12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2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301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5	1302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5	13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3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401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5	1402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5	14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4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501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5	1502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5	15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5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601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5	1602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5	16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5	16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01	084.0000H	84D	632,739	94,910	94,910	94,910	63,273	284,736	4,180,000
916	102	084.0000H	84D	632,739	94,910	94,910	94,910	63,273	284,736	4,180,000
916	103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16	104	059.0000H	59A	487,913	73,186	73,186	73,186	48,791	219,564	3,898,400
916	201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16	202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16	203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6	204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6	301	084.0000H	84D	647,123	97,068	97,068	97,068	64,712	291,207	4,180,000
916	302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6	303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6	304	059.0000H	59A	496,676	74,501	74,501	74,501	49,667	223,506	3,898,400
916	401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6	402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6	403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6	404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6	501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6	502	084.0000H	84D	658,630	98,794	98,794	98,794	65,863	296,385	4,180,000
916	503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6	504	059.0000H	59A	505,439	75,815	75,815	75,815	50,543	227,451	3,898,400
916	601	084.0000H	84D	658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20.07.17)	중도금2차 (20.09.25)	중도금3차 (20.12.04)	잔금 (입주시)	
916	704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6	801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6	802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6	803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6	804	059.0000H	59A	518,584	77,787	77,787	77,787	51,858	233,365	3,898,400
916	901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6	902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6	9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9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001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6	1002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6	10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0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101	084.0000H	84D	670,137	100,520	100,520	100,520	67,013	301,564	4,180,000
916	1102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6	11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1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201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6	1202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6	12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2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301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6	1302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6	13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3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401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6	1402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6	14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4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501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6	1502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6	15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5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601	084.0000H	84D	678,767	101,815	101,815	101,815	67,876	305,446	4,180,000
916	1602	084.0000H	84D	687,397	103,109	103,109	103,109	68,739	309,331	4,180,000
916	1603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916	1604	059.0000H	59A	525,156	78,773	78,773	78,773	52,515	236,322	3,898,400

주택가격 납부방법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 납부비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주택가격	15%	15%	15%	10%	45% (전용면적 59㎡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5,500만원 포함)
발코니확장비용	15%	-			85%

■ 납부기한

구 분	납부기한
계약금	2020.06.02.(화) ~ 2020.06.04.(목)
중도금 1차	2020.07.17.(금)
중도금 2차	2020.09.25.(금)
중도금 3차	2020.12.04.(금)
잔금 (발코니확장비용 포함)	2021.02.16.(화) ~ 2021.04.16.(금)

-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 납부하거나 선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잔금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의 연3%(현행, 변경가능)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며(입금 금액과 함께 가산납부 처리, 1차 중도금 등 구분액보다 과다 입금 및 할인된 경우 수납순서에 따라 다음 구분액에서 납부됨), 주택가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미납분에 대해 연체한 일수의 연6.5%의 연체료가 가산됨 (현행,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납할인 금액은 예정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고,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며,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주택도시기금(용자금)은 일시불로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 없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선납기간에 납부한 중도금, 잔금(발코니확장 잔금포함)은 입금 즉시 선납할인이 적용됨에 따라 반환청구가 불가하오니 선납기간에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요망  
※ 잔금(발코니확장 잔금 포함)까지 완납했을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절대 불가하며, 기 납부액의 반환 처리가 불가함.
- 중도금 및 잔금 고지서는 납부기한일 전에 주택분양계약서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주소변경 및 배달 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지서가 납부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분양수납부에 확인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납부금 조회란에서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시어 연체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임.  
※ 중도금 및 잔금 고지서 수령주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공사 분양수납부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fax.02-3410-7514) 하시기 바람.

**공사 홈페이지에서 납부금 고지서(중도금 및 잔금고지서)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우측 "납부금 조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아파트 분양금 조회 → 납부내역에서 중도금 등 확인 후 고지서 재발행하여 납부 금액 및 고객전용 입금계좌 확인

- 분양주택 분양금 납부내역서는 대출, 입주, 취득세 신고 등 납부내역 증빙용 서류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자 발급 가능 [계약 전에는 확인이 불가하며, 계약이후 가능]

**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금 납부내역서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고객센터 → 증명서 신청 → 3. 주택분양금 납부내역서 바로가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 본인 명의의 주택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 분양금 수납 담당자의 승인 후 출력 (담당자의 승인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출력 가능, 승인 시 문자 발송하여 승인 알림.)

※ 컴퓨터 사용이 어려울 시 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여 팩스 또는 방문발급 안내 받으시기 바람.

- 분양금 과오납 시에는 과오납반환신청서(공사 분양수납부 비치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계약자 신분증 사본 1부, 계약자 통장사본 1부를 분양수납부로 제출(fax.02-3410-7514)하시기 바람.

**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금 과오납신청서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고객센터 → SH자료실 → "반환청구 및 계좌입금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점심시간제외 12:00 ~ 13:00]

- 휴일(토,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하시고자 하는 세대는 당일 현장 수납이 불가하오니 금요일(공휴일인 경우 전날)까지 완납하시거나, 입주 당일에 가상계좌 입금(이체한도 증액조정 등 관련사항 체크 요망) 후 이체확인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을 실행하여 주말에 입주하는 세대는 반드시 입주 전(평일)에 대출실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4 입주자에 대한 용자(주택도시기금)지원 내용[전용면적 59㎡만 해당]

- 전용면적 59㎡의 주택가격 중 잔금에 주택도시기금(용자금, 5,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4㎡의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해당사항 없음.
- 입주 전(열쇠수령 전) 잔금과 주택도시기금을 전부 완납(또는 대환 실행)하여야 함.
- 주택도시기금을 일시상환 할 시 잔금 대출(디딤돌 대출 등)을 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기금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안내문을 추후 발송 예정.
- 주택도시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용자액이 변동되거나 지원이 없을 수 있음.
- 금회 공급하는 전용면적 59㎡이하 분양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주택으로 세대별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상환 가능하며, 대환(대출)시 상환 조건은 대환일부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가능함.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차주명의변경)일 전날까지는 공사에서 차입한 이율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고 대환일에 입주자가 용자금을 승계하며, 대환일 이후 적용이율은 연2.8%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됨]

지구 및 단지	전용면적(㎡)	대출금액(천원)	대환 전 적용이율	대환 후 적용이율	상환조건	상환(대환)기한
마곡지구 9단지	59	55,000	연 3.6%	연2.8%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비교하여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 전용면적 84㎡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해당없음.
- ※ 2020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용자 이율 등 조건이 변경 될 수 있음.
- ※ 주택가격 및 대출(대환)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대출금리 적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홈페이지 참조 http://nhuf.molit.go.kr)
- 잔금에 포함된 주택도시기금(용자금)은 일시상환(직접납부) 또는 대환(대출)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환의 경우 잔금 납부기한 내에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에서 대환 신청하여야 함.
- 주택도시기금 이자(월부금) 납부안내
  - 입주 전(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에 일시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차주명의변경)일 전날까지 주택도시기금 이자(월부금)가 가산되고 주택도시기금 상환(납부)기한일(잔금 납부기한 또는 건물보존등기 접수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건물소유권이전 등기 시행 시 안내) 익일부터 연체료가 가산됨.
  - ※ 연체료 이자율 : [전용 59㎡] 3개월 이내 연7.6%, 3개월 초과 연8.6% (현행,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일시 상환하는 경우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용자금) 대출을 원하지 않고 일시상환 할 경우에는 아래 해당은행의 상환계좌로 입주지정기한내 또는 입주(열쇠수령)하기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상환계좌에 입금된 주택도시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도시기금대출금 상황에 충당되므로 금액을 초과 또는 부족하게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일시상환 후 재대출은 불가함.

주택도시기금 일시상환 은행 및 계좌번호
상환계좌 별도 안내

- 주택도시기금(용자금)은 선납할인 없음.
- 상기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상환되지 않아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원활한 입주 진행을 위해 토,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할 경우 입주 전 평일(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까지)에 주택도시기금을 일시상환하시기 바람.
- 수분양자가 토,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할 경우 입주 전 평일(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까지)에 주택도시기금을 일시상환하여야만 월부금(주택도시기금 이자)이 발생하지 않음.

2. 대환(대출)받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용자금) 용자는 계약자(명의변경자) 앞으로 대출되어 잔금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대환(대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우리은행에 직접 용자금 대출을 신청하시고 은행에서 승인 통보를 하였을 경우에 대출이 가능함. (대출문의 :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금융센터 ☎02-3412-4681, 내선번호 310, 312, 313)
  - 대환 신청시 대환 실행 예정일까지 지연되는 시간(2~3주)을 고려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기금 대환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 대출(대환)승인 전 세입자가 있는 경우
    -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등
    - 주택도시기금((구)국민주택전세자금) 대출 기보유자 등
  - 입주개시 약 3주전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및 일시상환 방법에 관해 별도 안내문을 계약서상 주소지 또는 주소변경 신청한 주소지로 발송 예정.
  - 주택도시기금(용자금)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점심시간 제외 12시~1시]

## 05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공통사항 |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주민등록표 등·초본 기준)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외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동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서울특별시 1년 이상) 및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및 수도권)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거주기간 법령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순위별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 일반분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다자녀특별공급 제외)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지역 우선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 <표1>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

기준일	지역우선공급비율		해당지역 및 수도권 거주자 구분	
	해당	수도권	해당	수도권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2.26.)	100%	-	•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 2019.02.27. 이후 서울특별시 전입자(1년 미만 거주자)는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와 함께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미달시 공급 가능함
-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 ▶ 다자녀 특별분양
  -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 나머지 시·도에 50%를 배정하며, 미달 시 타 시·도에 배정함.

<표2>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일	지역우선공급비율		해당지역 및 수도권 거주자 구분	
	해당	수도권	해당	수도권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2.26)	50%	50%	•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 2019.02.27. 이후 서울특별시 전입자(1년 미만 거주자)는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와 함께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 ※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에 배정함

-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 위에 언급한 1 또는 2에 해당하여
    -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 가능(해당지역 청약불가)
    -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해당지역은 물론 타지역(수도권) 거주자라도 청약이 불가.

<표3>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 (1) 19.02.26.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19.02.26.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 대상자로 청약 불가 *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1) 또는 (2)에 해당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타지역(수도권) 거주자라도 청약 불가 * 다만,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니다.
--

-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당첨자는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공고일 1년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됨.(90일 이내의 단기간 해외체류는 무방)

-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마곡지구 9단지에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한사람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에 한함)]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인 1인이 동일단지의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에 한함)] 또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신청 대상자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마곡지구 9단지의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해당기간 임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이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해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해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

< 해당첨 제한 적용주택 당첨사실 등 청약제한사항 조회 방법 >

- 한국감정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화면 중앙 [청약제한사항 확인] → 청약제한사항 관련 안내 확인 “예” 선택 → 기타 고지사항(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예” 선택 → 조회기준일(모집공고일 또는 당첨자발표일) 입력 → 검색버튼 클릭
-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자는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이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주택조합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단, 청약자 본인에 한하며, 조회일 직전 영업일까지 한국감정원에서 전산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당첨사실만 조회 가능함)

## 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I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 게시** : 2020.05.21.(목) 17:00이후 공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공사 홈페이지→화면 중앙 [분양]→주택소유현황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확인)
- **적용대상**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다자녀·노부모 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회현제2시민아파트·기타 기관추천 등) 신청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공급신청 자격자(아래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참조)'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에 포함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규칙 제2조 제2의3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상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및 분양권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자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첨부된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판정)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봄.
  - 20제곱미터는 해당 주택의 전체 전용면적을 의미하며 소유자별 공유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에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민원회신문(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물임을 확인)을 받아야 인정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된 연면적 200㎡미만 이거나 2층 이하인 건물에 한정됨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9.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공급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임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함.
    - ※ 예시) 세대주의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세대원인 부모의 무주택 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임.
  - 단, '무주택세대구성원'중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공급신청자가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함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II 소득기준 I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 **검토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 공급유형별 세부 소득적용기준은 아래 <표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산요건은 마곡지구 9단지의 경우 해당 없음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규칙 제2조 제2의3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임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기준 아래 <표4>의 소득적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에 한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
- **공급신청자의 소득금액 적용**
  - 소득기준의 검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임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임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함.
  - 향후 소득 검색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등 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가능함. 만일 부적격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공적자료를 보유한 원천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함.
  - 공급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조사대상자의 의무**
  - 공사가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전원의 소득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함.

- <표4> **소득적용 기준**
- **소득기준 검증은 당첨자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
- **조사대상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상사·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금회 공급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으로(「공공주택 특별법」비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가 적용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함**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단위 : 원)					
구분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554,983이하	6,226,342이하	6,938,354이하	7,594,083이하	8,249,812이하	8,905,541이하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665,980이하	7,471,610이하	8,326,025이하	9,112,900이하	9,899,774이하	10,686,649이하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7,221,478이하	8,094,244이하	9,019,860이하	9,872,308이하	10,724,756이하	11,577,203이하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655,729원) 추가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2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786,875원) 추가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3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852,448원) 추가
-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가구원수 산정 기준

구분	가구원수 산정 기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직계존속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인 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소득도 합산함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 · 초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소득금액 조사방법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민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아래 표의 상시근로 소득자료 반영순위(① 건강보험공단→② 국민연금공단→③ 근로복지공단→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 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람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이 있음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 건강보험공단 ② 국민연금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 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한국고용정보원 : 실업급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군인연금 : 국방부퇴직연금급여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급여 보훈처: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보상급여등

■ 부적격자 소명 안내

- 소득조사 결과 기준초과로 판명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자료 제공기관(위 표의 "소득자료 출처"참조) 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반드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함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주택형	계	해당	수도권
합계		96	49	47
마곡지구	9단지	059.0000H	22	21
		084.0000H	48	24
		084.0000N	5	2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1.02.27.이후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진단서 위조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해당 분양주택의 입주자 촉박하여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불법낙태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함)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 (<표4> 소득적용 기준 참고)

####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해당청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거주기간 법령 개정으로(2019.11.01.신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3>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를 확인하시기 바람.

####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2>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다자녀 특별분양)”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신청자 1인이 다자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사람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 배정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정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 (2014.02.27. 이후 출생)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5) : 「출입국관리법」제 88조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점계산시 제외함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4) 산정 : 만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신청자 및 배우자가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해당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주택형	계	해당	수도권
합계		48	48	-
마곡지구	9단지	059.0000H	21	-
		084.0000H	24	-
		084.0000N	3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1955.02.26. 이전 출생)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는 분
  - ④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예시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모(母)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된 부(父)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음)
    - ※ 세대주 무주택 기간이 3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 기간이 1년일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1년임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표4> 소득적용 기준 참고)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해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해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거주기간 법령 개정으로(2019.11.01. 신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3>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중 선정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분양 <표5>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함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신청자 1인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사람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주택형	계	해당		수도권
			우선공급 (75%)	일반공급 (25%)	
합계		288	218	70	-
마곡지구	9단지	059.0000H	130	98	32
		084.0000H	143	108	35
		084.0000N	15	12	3

- 우선공급(75%) 단수 처리기준은 소수점 이하 절상처리함
- 예시) 13세대 공급시 : 우선공급(75%) - 10세대 배정, 일반공급(25%) - 3세대 배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2.26.)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함. 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순위로 청약이 가능함
    - 1. 이 규칙 시행(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
    -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
    -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0.02.26.)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이하인 분(<표4> 소득적용 기준 참고)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해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해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거주기간 법령 개정으로(2019.11.01. 신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3>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중 선정함
  - 우선공급 대상자(신혼부부만 해당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5%)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임.
    - 이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물량의 75%를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물량(25%)은 우선공급 넘쳐서 및 일반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 청약접수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아래의 하단 표 참조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8.12.10.까지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1.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많은 자
  - 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
- ※ 자녀의 수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출산한(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미성년 자녀를 말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를 인정함(임신진단서로 임신사실 확인)
  - 현재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로 확인함
-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진단서 위조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정적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해당 분양주택의 입주자 촉박하여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불법 낙태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함)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함.
-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해당
- ※ 동일인과의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청약접수시 적용되는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75%)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554,9830이하	6,226,3420이하	6,938,3540이하	7,594,0830이하	8,249,8120이하	8,905,5410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665,9800이하	7,471,6100이하	8,094,2450이하	9,112,9000이하	9,899,7740이하	10,686,6490이하
신혼부부 일반공급 (25%)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20%)	5,554,983초과 6,665,980이하	6,226,342초과 7,471,610이하	6,938,354초과 8,094,245이하	7,594,083초과 9,112,900이하	8,249,812초과 9,899,774이하	8,905,541초과 10,686,649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130%)	6,665,980초과 7,221,478이하	7,471,610초과 8,094,245이하	8,094,245초과 9,019,860이하	9,112,900초과 9,872,308이하	9,899,774초과 10,724,756이하	10,686,649초과 11,577,203이하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부정적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신청자 1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 처리됨
-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사람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정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Ⅰ 생애최초 특별공급

### ■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주택형	계	해당	수도권
합계			192	192	-
마곡지구	9단지	059.0000H	87	87	-
		084.0000H	95	95	-
		084.0000N	10	10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 미혼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음(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음)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 사실이 있는 분을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요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되는 소득자료를 적용함.
-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분(<표4> 소득적용 기준 참고)

###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정적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거주기간 **법령 개정으로(2019.11.01.신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정적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3>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를 확인하시기 바람.

###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발생시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중 선정함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에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중 선정함
- 부정적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신청자 1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 처리됨.
-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사람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정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Ⅰ 기타 특별공급

### 1.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따라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특별공급은 미적용)
  - 추천기관 현황(예시) :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장애인(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의사상자(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다문화가족(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중소기업근로자(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기준은 각 해당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관에서 미통보된 자가 신청시 무효처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정적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한 분 중 신청기간(2020.03.09.~03.10)에 청약신청한 분을 당첨자로 선정하며, 당첨자 선정 후 무주택 여부,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을 심사하여 적격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함.
  - ※ 해당기관에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청약신청(인터넷)을 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체결 불가
  - ※ 해당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도 청약신청을 하여야 기관추천 예비자로 확정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먼저 자격요건을 갖춘 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 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되어 공사에 통보된 분만 청약신청 가능함.(임의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정적 처리됨.
- 부정적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기관추천 예비자 및 다른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의 낙첨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2. 이주대책대상자 및 철거민 특별공급(마곡지구 이주대책대상자 및 회현제2시민아파트 대상자)

-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부서에서 통보한 마곡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및 회현제2시민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신 분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철거민 : 「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2008.04.17. 이전 규칙)」을 적용받아 철거소재지 구청에 신청접수하여 금회 분양대상단지에 해당구청으로부터 적격확정 통보자

- 유의사항(특별공급대상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거나 함[세대에 속한 자 모두 무주택]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2의3)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규칙 제2조 제2의3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급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해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해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당첨자 선정방법
  - 보상부서에서 확정된 마곡지구 이주대책대상자 및 서울 중구청 회현시민아파트 철거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중 신청기간(2020.03.09.~03.10)에 청약신청한 분을 당첨자로 선정하며, 당첨자 선정 후 무주택 여부, 청약 제한사항을 심사(이주대책대상자 제외)하여 적격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함.  
 ※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포기처리 함
  -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의 낙첨자 및 기관추천 예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항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1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해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해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사항에 해당되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한 분은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며, 2순위 청약이 가능함
  - 거주기간 법령 개정으로(2019.11.01.신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3>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지역우선공급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에 따라 공급하며, 선순위 신청자에게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 시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중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 시 차순위 신청자에게 공급
  - 1순위(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1순위(서울시 1년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까지 청약접수 받으며, 미달될 경우 2순위까지 청약접수 받음.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후에는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다음날 추가접수 받지 않음  
 ※ 1순위자가 2순위 신청일에 접수할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접수됨
  - 당첨자는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르고, 1순위 내 동일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항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2인 이상 각각 신청, 부부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에 한함 ※ 2순위에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며, 통장사용 불가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선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 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공급신청자가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0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급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공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폐기됨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는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선정하며,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예비입주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의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배정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예비입주자는 공사 분양수납부로 방문하시거나 서면의 방법으로 신청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 본인의 책임이며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함
  - 특별공급 예비자는 지역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 특별공급 당첨 세대 중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세대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소진 후에도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됨
  - 기관추천 예비자의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처리를 준용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5>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선정함.
  -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됨

## 07 중복청약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1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청약,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동일세대구성원 범위 (규칙 제2조 제2의3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다른주택(당첨자발표일이 다름)에 중복 당첨된 경우 먼저 당첨된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첨 주택의 해당첨제한 적용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신청인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또한,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자 본인에 한해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 가능하며, 이 외의 중복신청은 불가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불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이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세대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철거민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 |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신청·계약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위조 등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도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 입주자저축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주택공급을 신청·계약한 경우
  - 서류결격 또는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주택공급관련법령에 위배될 경우
  - ※ 입주자저축 양수 · 양도 등 주택법(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시 당첨자로 관리되며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함
-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로(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전산관리되고 해당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부적격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공사사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08 신청일정 및 장소

### | 최하층 우선배정 (노약자 · 장애인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3명 이상)에 한함) |

-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 금회 분양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나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①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 배정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선택하여주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고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4층인 주택이 있음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와 ③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최하층 배정을 신청할 경우,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에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자격입증서류 : ①, ③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신청일정 및 장소 |

#### ■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일자	신청장소	신청방법
특별공급	기관추천, 이주대책대상자 및 철거민 (마곡지구 및 회현제2시민아파트)	2020.03.09.(월) ~ 03.10.(화)	인터넷청약 (09:00~17:30) ※ 방문청약불가
	다자녀 특별공급	2020.03.0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20.03.10.(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	2020.03.16.(월)	인터넷청약 (08:00~17:30)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 (09:00~16:00)
	1순위 (서울시 1년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	2020.03.17.(화)	
	2순위	2020.03.18.(수)	

-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분양의 경우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람.
- 상기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구분하여 접수하며, 공급구분별 · 순위별 신청일자 외에는 신청할 수 없음. (순위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특별공급은 접수건수가 공급세대수를 미달하더라도 다음날 접수받지 않음.
- 일반공급 1순위(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1순위(서울시 1년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접수를 받으며, 미달될 경우 2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후에는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날 추가접수 받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접수 경쟁률 및 청약마감여부는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의 '공고 및 공지'에, 일반공급 청약접수 경쟁률 및 청약마감 여부는 주택청약사이트(www.applyhome.co.kr → 청약 경쟁률)에 각 순위접수 당일 21:00 이후에 게시되며,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9. 신청방법」참조

## 09 신청방법

-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분양의 경우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다만, 신청 당일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취소나 정정 시 예외)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여부, 신청순위,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분양가족수, 재당첨제한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인터넷 청약을 위해 신청접수일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인터넷 신청 |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함.
---

#### ■ 신청시간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간	09:00~17:30 (해당일에 한함)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시간	08:00~17:30 (해당일에 한함)

-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 신청방법

- 특별공급
  - 해당 신청일에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후 개인 공인인증서 및 도로명주소로만 청약신청 가능하오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시스템 → 주택분양 → 인터넷청약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인적사항 작성/청약서약 → 가정사항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 일반공급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청약하시기 바라며,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청약신청일 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청약통장 가입자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 아파트 - 인터넷 접속 가능, 모바일APP설치["청약홈"검색 (안드로이드만 가능)]
신청시간	- 08:00~17:30 ※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완료 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 신청 시 유의사항

- 위 신청접수 시간 등 업무처리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청약관련 업무처리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시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공급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여부, 신청순위, 무주택여부 및 기간, 재당첨제한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일로부터 1년 간(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에 한함)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하여 공사에서 확인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공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시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명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가입한 은행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입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 조회방법

구분	조회방법
청약통장 가입자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 정보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 은행창구 청약신청 (일반분양 신청자중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불가자) |

- 신청시간 : 창구청약 가능시간은 09:00~16:00이며, 일반분양 신청자중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자에 한하여 은행 창구에서 방문 청약신청 가능
- 청약장소 : 청약통장 가입은행
- 구비서류 : 아래 필요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신청 시 (배우자 신청 포함)	① 주택공급신청서	청약장소 양식비치
	② 청약통장	
	③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④ 본인·배우자 주민등록증	
	⑤ 배우자 입증서류(배우자 신청 시) -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표등본 -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구비서류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임.	① 위임장	청약장소 양식비치
	② 본인(청약자)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③ 본인(청약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공사에서 확인함.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문 공고나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공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10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당첨자는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 확인서류를 비교하여 적격확인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기한 내 반드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 공고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 중으로 공사로 내방시 개인적인 대책(마스크 착용 등)을 마련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람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계약체결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0.03.25.(수) 17:00 이후</li> <li>• 장소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APP설치["청약홈"검색 (안드로이드만 가능)]</li> </ul>	2020.03.30.(월)~04.01.(수) (09:30~17:30)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06.02.(화)~06.04.(목) (09:30~17:30)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발표장소(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문의 전화에는 개별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공사 홈페이지에 함께 발표됨.
- 당첨자 발표 게시글에 계약체결장소 별도 안내 예정

#### ■ 당첨 확인방법

구분	확인방법
인터넷 확인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청약정보 → 대상자 조회 →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제공일시 : 2020.03.25.(수) 17:00 이후]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당첨자발표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조회 ※ 모바일서비스에서도 확인가능(APP 설치)
전화(ARS) 확인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5 → 2 주민등록번호# [제공일시:2020.03.25.(수) 17:00이후]

- 전화(ARS)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문의 전화에는 개별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명단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공사 로비(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 시간은 09:30~17:30이나 적격 당첨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는 관계로 계약금 고지서 수령 후 은행 영업시간(9:00~16:00) 내에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오후 3시 이전에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인 2020.06.04.(목)은 계약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계약체결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은행 영업시간 내에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의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분양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당첨자에게 있으며,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여 적격(정당)당첨자로 확인된 후에 계약체결 가능.
- 계약금(발코니 확장 계약금 포함) 납부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계약금(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만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은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입주자격)을 취소함.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2020.03.30.(월)~04.01.(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당첨자로 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서류 미제출시 단순 계약포기로 간주(당첨자로 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되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서류제출을 통하여 부적격 사유를 입증해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됨.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 우편접수, 퀵서비스 배달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관련 추가서류 제출은 해당자에게 별도로 안내예정임.
- 서류발급 시 아래 내용에 따라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 인터넷 청약신청한 기관추천·철거민 특별공급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제출(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표기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제출
		○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세대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전원 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이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서 확인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마곡지구 9단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내 첨부파일 참조
		○	⑥ 재직증명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지역거주요건이 있는 공급대상으로 당첨된 분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다자녀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②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③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와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공사비치)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제출 ※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가 명기된 병원발급 원본 제출(기타 임신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임신증명서류는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불법낙태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 파악을 위해 '상세'내역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④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일자 확인 필요시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와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공사비치)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진단서)제출 ※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가 명기된 병원발급 원본 제출(기타 임신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임신증명서류는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불법낙태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인 이상 세대로 신청인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동일등본 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6> 참조	본인	• 신청인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임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기관추천 및 특별공급 대상자	○	①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주자모집공고(2020.02.26.) 이후에 주소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②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②, ③ 제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표기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③제출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④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또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자 :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특별공급은 제외	
철거민	○	①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①, ② 제출(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표기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②제출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해당자격	발급기준	소득 관련 제출 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서류	근로자	본인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본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본인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임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납부여부 확인용 서류이며 가구원별 총 소득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심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본인	•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④ 세무서

■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에 주소변동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표기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제출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직계존속	• 2007.12.31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자의 경우 제출
		○	⑤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⑥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⑦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직계존속	
		○	⑧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⑨ 재직증명서	본인	•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그 세대원 전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마곡지구 9단지 분양주택 임주자모집공고' 내 첨부 파일 참조	
	○	⑩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 중 태아 세대구성원 산입 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제출 ※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가 명기된 병원발급 원본 제출(기타 임신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임신증명서류는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불법낙태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		본인	• 지역거주요건이 있는 공급대상으로 당첨된 분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임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시 추가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비고	
본인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 구비	
배우자	① 본인(청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 구비	
	②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① 본인(당첨자)이 인감날인한 위임장	신청자 구비 ※ 위임장은 공사 홈페이지 및 신청장소에 비치
		② 본인(당첨자) 인감증명서	
		③ 본인(당첨자) 인감도장	
		④ 본인(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서명확인 방식	① 본인(당첨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것	
② 본인(당첨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본인(당첨자) 도장			
④ 본인(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아래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지참 ② 계약금 납부영수증(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영수증 포함) 원본 ③ 당첨자 도장(서명 가능)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으로 간주	인감증명 방식	① 당첨자가 인감날인한 위임장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③ 당첨자 인감도장
		④ 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서명확인 방식	①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당첨자 도장
		④ 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11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 I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I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3급 이상 지체 · 뇌병변 장애인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호대상대상자 · 5 · 18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설치는 공정상 2020.06.04.(목)까지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시공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설치가 시작되므로 신청 후 취소나 변경이 절대 불가함.
- 준공 시까지 설치기간이 촉박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시 해당부분의 시공이 진행 중일 수 있음.

구분	선택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현관
	공용욕실	좌변기 안전손잡이[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1개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휠체어에 앉아서 이용 가능한 높이(1.0~1.2M)]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는 계약 장소에 비치함.

신청 시기	신청시 구비서류
계약 시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대상대상자증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12 입주자(계약자) 사전점검 방문 및 입주안내

- 입주 후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점검 방문제도를 실시함.
- 사전점검 방문 및 입주일정

단 지	사전점검 방문일(예정)	입주시작(예정)
마곡지구 9단지 분양주택	2021.01.16.(토) ~ 2021.01.17.(일)	2021.02.16.(화) ~ 2021.04.16.(금) [기간 : 60일]

※ 상기 일정은 준공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 입주지원센터는 입주개시 7일 전, 관리사무소는 입주개시 14일 전에 개소하며, 개소 전에 입주개시일 및 상세내용을 개별 안내함(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3 지구 · 주변 여건 및 단지 여건, 기타 유의사항

### I 지구 · 주변 여건 및 단지 여건 I

- 지구 및 주변 여건
  -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에 따라 세대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지구여건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마곡 도시개발사업 여건변화 및 민원사항 해소 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한 개발계획,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 및 입주자는 이에 대하여 수인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 관련도서 및 상세도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지구 홈페이지(magok.i-sh.co.kr) 및 마곡위례사업처 마곡사업부(Tel. 02-3410-7681~7588)에서 열람 가능함.
  - 단지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북동측에 위치한 서남물 재생센터에서 여름철 다소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남쪽에 위치한 농수산물센터로 인해 악취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9단지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하는 복합건축물(주택 + 판매시설 등)로 공항로(광로)에 위치함에 따라 도로변 차량소음이 심할 수 있으며,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으며, 수분양자 및 입주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방화로 군부대는 2023년 이후 이전 예정이며, 이전 이후 방화로 군부대 도로설치공사 잔여구간 공사예정이나 군부대 이전일정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반시설공사(방화로 군부대 도로설치공사 잔여구간등)이 순연될수 있음
  - 단지 내 지하로 지하철 5호선 및 공항철도 시설물이 위치해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하부로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5호선, 9호선) 통과부분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설물 소유 및 보호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 예정
  - 단지 동측에는 마곡역, 서측에는 송정역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동측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통일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있음
  - 입주시점 또는 입주 후 9단지 남측의 10-2단지 공사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중심에 남북으로 공공보행통로가 지나갈 예정임
  - 단지 지하에 철도가 관통하며 남측 공항로 변으로 5호선이 지나가고 있음
  - 입주시점에 908, 909동 남측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의 조성이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해당 공원은 마곡9단지 준공과 별개로 택지개발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유소, 가스충전소, 주차장, 택시차고지,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환기구 등 지상구조물 포함) 등 대상부지 인근 시설물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분양자 및 입주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도로 및 철도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 및 철도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경계 웬스는 지역 규정,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지구 내 · 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외부시설(도로시설물/가로시설물/횡단보도 등)은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위치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당해 지구 · 단지를 방문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소음 · 조망 · 일조 · 도로 · 환경저해 · 주변 혐오시설 유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학교관련 유의사항
    - 학생수용 및 교육자치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감사양천교육지원청의 사정에 따라 인근학교로 분산배치 등 통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입주 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람.
    - ⇒ 현재 학급의 학급당 인원 30명을 초과하고, 교실이 부족하여 학교의 과대, 과밀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초중학교 모두 이를 수용할 교실이 부족하여 인근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어 원거리 배정이 이루어 질수 있음

학교	학교명	위치	해당 교육청	연락처
초등학교	공향초등학교(901-907) 송정초등학교(908-91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6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3길 18	서울특별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2-2600-0996
중학교	별도 문의			02-2600-0847

■ 단지공동사항

- 동일한 단지 내에 임대분양 혼합건립(Social Mix)하며 동에 따라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같은 동에 있을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진동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공향대로 및 방화대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시설은 지하 1~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도로가 없고 보행로가 있음. [단, 비상차량(소방차 등), 이삿짐차량, 쓰레기 수거차량만 사용가능, 택배차량이나 개인차량 사용불가]
- 901~905동 및 908~919동의 지하주차장은 통합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906동, 907동, 업무시설, 판매시설의 주차장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주차장간 연결되지 않음
- 단지 사항에 따라 판매시설, 업무시설이 있으며, 관련 주차공간이 지정되어 있음. 지상3층에 옥상조경시설(시설,포장,식재)이 조성되어 이로 인한 사생활침해 세대(904,905동)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자의 거주방식에 따라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내부에 기동과 마감이 들출될 수 있으며, 서비스영역인 발코니에 설치되는 기동의 위치는 동일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저층부 일부 세대는 도로, 공원녹지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실내가 투시될 수 있고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 및 보안등(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 침해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세대 및 지상주차장 주변,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채광용 천창 등으로 일부세대의 경우, 차량의 진출입시전조등, 경고음 및 공회전 등에 의한 눈부심, 소음, 매연 등 불편사항을 겪을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동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운행 및 불빛(차량전조등 포함),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우천 시 필로티 부분으로 비가 많이 들어칠 우려가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설비 등의 설비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에 우수홍통 및 배수관이 노출되어 우기 시 배수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마곡지구 9단지 는 지역난방방식이므로 개별난방에 비하여 세대 난방공급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 지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84타입 현관부위 일괄소등 스위치를 사용하여 일괄 소등하는 경우 리모콘전등스위치에 내장된 정전보상기능 시간초과 시 재설정이 필요 할 수 있음. (일괄소등 스위치는 84타입에만 설치됨)
- 영구배수공법에 따른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 등 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지역난방요금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방지를 위해 송풍기 가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사용은 통로 2.3M, 주차구간 2.1M 이하의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2.1M를 초과하는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됨.
- 지하주차장 및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별 출입문은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단지 경계에는 별도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판목 및 교목 등을 식재함.
- 단지 조정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84타입의 경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준수로 발코니 창호가 미설치 된 부분이 있으며, 발코니 창이 없는 오픈발코니로 계획되어 있고, 해당 오픈발코니 부위의 난간대는 1.8M 계획되어 있으며, 동절기 입상관 동결이 발생할수 있음
- 84D2, 84F 타입은 비화장으로 공급됨
- 일부세대 간벽 및 외벽에 면하는 침실의 콘센트는 결로현상 및 소음전달 방지를 위해 다른 세대와 위치가 다를 수가 있음.
- 동일 타입이라도 발코니에 위치한 기동의 모양, 드레인 위치, 배관 및 수전 위치, 점검구 위치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시공사가 달라 타입 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조명기구,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마감자재는 석재, 석재뿔칠, 도장마감 등으로 동별로 서로 상이함.
- 전 세대 안방 발코니는 비화장으로 공급됨.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PD점검구가 신발장 내부 또는 하부에 설치되어 있고 썩크대 개수대 하부에 난방분배기, 온도조절시스템, 싱크수전 절수기, 음식물탈수기가 설치되어 공간이 협소하므로 해당가구 사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난방, 급수, 급탕 사용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계량기(전기, 급수, 급탕, 난방, 가스) 는 원격식 검침방식임.
- 아파트 계단실 창은 2개층 당 1개소(1개소 고정창)로 환기를 위한 개폐 가능함. (단, 외부에 접하지 않은 계단실은 제외)
- 세대 내·외 방법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지상에 쓰레기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일부 인접세대의 경우 냄새, 미관 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손을 씻는 수전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용중단으로 불편함이 있음.
- 승강기 제어반은 최상층 엘리베이터 승강로 근처에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 승강기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음.
- 비주거시설 및 근린생활, 부대시설 상부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부에 위치한 동의 일부 세대에 소음, 시각적 프라이버시 침해, 냄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여건에 따라 실내부 및 발코니에 기동이 들출되어 있어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며, 천장마감 부위가 상이할 수 있음.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는 환기설비장치 및 배관의 설치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 타입 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발코니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거실창호는 하부에 고정창이 설치되어 열리지 않으며 상부만 개폐 가능함.
- 주방과 욕실의 환기구에서 하부 세대의 냄새(주방의 음식 조리 시 냄새, 화장실의 담배냄새 등) 가 유입될 수 있음.
- 주방가구는 중소기업자재 사용대상 공사로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됨.
- 세대 싱크대 상·하부장 및 불박이장(59타입 비화장 제외, 불박이장 설치 안 됨) 뒷면과 바닥에는 합판마루, 타일, 몰딩, 걸레받이, 도배 등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거실발코니 및 일부 침실발코니를 확장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발코니 확장면적은 확장 전 발코니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및 욕실환기를 위한 공동연도를 사용하므로 이웃세대의 렌지후드/환기팬 가동으로 인한 냄새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중 폭 850mm이상 제품은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품설치 전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세탁기와 에어컨 실외기가 근접하게 계획되어 두 제품의 크기에 따라 서로 간섭될 수 있으며, 세탁기 배관설치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외부 그릴창에 맞게 하부에 일정 높이의 공간을 두어야 함
- 에어컨 형태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이 발코니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주 후 가동 시 소음과 열이 실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주침실 1개소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총2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수관이 구조체에 매립되어 있어 현재 보편적으로 판매되는 에어컨 제품의 설치가 가능함. (단, 설치위치는 평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천정형 에어컨 설치는 불가능함.)
- 또한 기타 침실에는 에어컨 설치가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냉방기 설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발코니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내부 미관이 저해되거나, 설비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 발코니 위치 및 소음 발생량이 다를 수 있음.
- 단위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수전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세탁실 발코니는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가 손빨래 수전과 간섭되거나 수전 사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우려가 있으므로 창문 및 실외기 그릴을 닫고 보온조치를 하는 등 동파에 대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각종 3층 이하 세대 세탁실에는 저층부, 고층부 배수관이 함께 설치되어 발코니가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기계, 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환기탑(DRY AREA),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주차관제용 출차주의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실 및 각종 지하에는 아파트의 급수, 급탕, 난방 및 배수를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 가동 시 발생한 소음이 저층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지붕층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의 일부세대에 소음, 시각적 사생활 침해, 냄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 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손상시킨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와 복구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별로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욕실폰, 주방TV폰 등 마감자재는 동일 평형일지라도 사이버 견본주택에 보여 지는 이미지와 단지별로 제작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다르며 설치수량 및 배치 구조도 실내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일부세대 간벽 및 외벽에 면하는 침실의 콘센트는 결로현상 및 소음 전달방지 등을 위해 다른 세대와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세대내 발코니 동체감지기는 아파트 시작층인 1,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어 있음.
- 실내 및 외부에서 일부 기능의 원격감시 및 제어 가능한 홈네트워크 설비로 시설됨.
- 필로티 상부세대 및 지상주차장 주변,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채광용 천창 등으로 일부세대의 경우, 차량의 진출입시전조등, 경고음 및 공회전 등에 의한 눈부심, 소음, 매연 등 불편사항을 겪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램프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상부 채광을 위한 TOP-LIGHT 설치로 인해 조망에 불리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뺌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세대환기시스템은 계절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안방 및 거실에는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음
- 승강기는 정부정책에 의해 동별로 지급자재와 시급자재 혼합되어 설치되므로 제조사가 다름.
- 지하 주차장에서 각종 아파트는 B1~B2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이 가능함.
-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노인정,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기구, 운동기구 등 조정시설물은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조경 수목 포함)에 대하여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팜플릿은 전용면적별, 사이버건본주택은 대표평형으로 제작되었으며 내부 시설마감은 자재품질, 제조회사 도산,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인허가 관청의 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될 시와 본 아파트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며, 동일 단지내 동일한 평면유형이라 할지라도 색상과 형태가 다소 다를 수 있음.
- 단지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명칭,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목재마루 및 타일마감재, 위생도기 등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결로방지를 위하여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제습장치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인은 장비 가동에 의한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함.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 시 벽체 드릴링 작업에 따른 전기, 통신, 에어컨 매립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작업 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기 바람.
- 세대내 주방가구의 김치냉장고, 냉장고 및 에어컨실외기 공간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세대 발코니에 드럼세탁기 설치 시 내부치수 협소로 배치조정 필요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휘트니스 시설 등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거나 인접한 공가세대가 있을 경우 열손실이 커지므로 초기 난방 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아파트 진·출입부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 및 연접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층세대 발코니와 지상바닥의 높이 차이가 적어 빗물 유입이 우려됨.
- 비주거등 옥상정원에 발전기(비주거) 연도 설치로 인하여 발전기 운전시 배기가스가 배출될수 있음

■ 단지여건(9단지)

- 908, 909동 전면 어린이공원은 마곡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의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구간으로 본 공사의 준공시점과 다를 수 있으며 외부인이 사용가능한 공용공간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로 인해 사생활침해 세대가 발생할 수 있음 (공향철도시설인 환기창이 지면으로부터 2M내외 노출되어 있어 시야 간섭 세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준주거지역으로 단지내 비주거 시설(판매, 업무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음
- 901동 1층에는 게스트룸, 직원휴게실, 바이크 스테이션, 필로티가 위치함
- 902동 1층에는 어린이집 및 필로티가 위치함
- 903동 1층에는 판매시설과 필로티가 위치함
- 904동 1층에는 관리사무소와 필로티가 위치함
- 905동 1층에는 작은도서관 및 필로티, 관리사무소가 위치함
- 904, 905동의 관리사무소는 연결되어 있음
- 906동 1층에는 판매시설과 필로티가 위치함
- 907동 1층에는 판매시설과 필로티가 위치함
- 908동 1층에는 경로당과 필로티가 위치함
- 908동 남측에는 공향철도 환기탑(갑기)이 배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보행 시 흡연 및 쓰레기 투척 등은 관련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909동 1층에는 주민회의실, 주민휴게실 및 필로티가 위치함
- 910동 1층에는 판매시설 및 필로티가 위치함
- 911동 1층에는 필로티가 위치함
- 912동 1층에는 주민운동시설 및 필로티가 위치하여 소음발생으로 불편할 수 있음
- 913동 1층에는 판매시설 및 필로티가 위치함
- 914동 1층에는 필로티가 위치함
- 919동 1층에는 필로티가 위치함
- 판매시설 및 지상주차장의 영향으로 동일 레벨의 907동 3, 4호라인 층표기와 906동 1~7호라인 층표기가 1개층씩 차이가 발생함
- 문주는 주출입구#1에만 설치됨
- 901~905동, 908~919동은 지하1, 2층으로 구성된 지하주차장이 있으며 단지 북측 주출입구#1과 부출입구를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음
- 906동 및 907동은 지하 1, 2층으로 구성된 주차장이 있으며 단지 동측 주출입구#2를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고(주출입구#1 및 부출입구로 진입 시 해당 지하주차장 접근 불가), 지상 1층~3층 주차장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용 주차장으로서 관리를 위해 별도의 주차 차단기로 관리됨.

##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안내

- 비상차로 경용 보행로가 조성되며 이로 인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자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대지의 녹지 공간 확보로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며, 이삿짐 운반 시 후면 창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전면 창을 이용한 이삿짐 운반 시 충격 등으로 인해 하부 고정창이 파손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자보수 및 부속품 교체 등은 입주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또한, 보차도 이용 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동별 배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정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제연철편, 탑라이트)이 노출되어 있어,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한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악취 및 조망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등)에는 주민공동을 위한 D/A가 설치되며, 일부 D/A는 아파트 건물에 매립되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에 따라 생활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배치 상 세대 전 · 후면에는 주동 출입구 경사로,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출입경사로, 지상 주차장,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이에 주변 인접 세대에는 조망권, 일조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동별, 층별 또는 세대별로 통풍, 콘크리트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 주변부지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부에도 단차이가 발생하여 주동 및 주민공동시설 접근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정,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지하주차장의 구조 형식상 일부 기동 및 벽체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은 기동 디자인에 따라 설치 높이가 다를 수 있음.

- 단지 내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단지 내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함.
- 계단실 및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되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에 의거 계단실 창호를 자동폐쇄형으로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용부 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엘리베이터층)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실사공시 입면디자인(저층부 도장 디자인 포함), 주출입구, 조정, 색채, 물딩, 창호, 문주, 부대복리시설, 옥상 장식물, 필로티,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업,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정 수목, 시설물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와 형태, 재료가 입주자 등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는 보행자의 시선에 사생활 또한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외부 물딩마감 적용으로 발코니 외부 물딩구간(외벽 중 3층 바닥위치) 에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으로 인하여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형태 및 구조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결로방지를 위하여 지하2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제습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피난계단에는 창호 자동 개폐기가 설치되며, 피난계단 방화문의 임의 사용으로 인한 불량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에는 환기가 가능한 창문형자동폐쇄장치가 매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계단실에는 2개층 당 1개소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공용부 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차이 및 건물에 음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청약 전에 당해 지구 ·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본 공사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준공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 활용될 수 있음.
- 작은 도서관에 제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 · 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 하여야 함.
- 본 단지 준공 후 주민공동시설, 조명시설 등 단지 내 구조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적용료는 입주자 부담으로 함.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의 부대복리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
- 장애인 신청 세대의 경우 일반세대와 평면이 동일하게 제공되므로 휠체어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곡지구 9단지외의 경우 추가선택목은 해당없으며 수납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임(쿠팡(3구)는 기본선택품목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내용(위치)
	진입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m 도로</li></ul>
	단지내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4 ~ 6m 도로</li></ul>
관리사무소	• 904, 905동 지상1층 (관리사무소, MDF, 방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901동 지상1층 (직원휴게실)</li></ul>
공개공지	• 909, 910동 전면 지상1층 공개공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906, 907동 전면 지상1층 공개공지 2</li></ul>
경비실	• 주출입구 1, 2 및 부출입구 총 3개소
통신실	• 지하주차장#1, 2 지하1층
기계/전기실	• 지하주차장#1 지하2층 (지하1층 우수기계실 포함)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1, 2 지하1층 ~ 지하2층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두 개로 구획되었으며, 양측이 연결되지 않아 지하층 내 차량 또는 도보를 이용한 접근이 불가하므로 차량을 이용한 단지내 출입 시 주의가 필요함.

- 903, 904, 908, 909동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 배치되어 있음
- 914, 917, 918, 919동은 임대주택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901, 902, 905, 906, 907, 910, 911, 912, 913, 915, 916동은 분양주택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901동 3, 4호라인, 902동 3, 4호 라인은 84D2, 84F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확장 세대임
- 906, 907동의 59C, 59D타입은 1.8M 난간이 포함된 지붕이 없는 구조의 테라스가 있으며, 해당 면적은 세대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쓰레기보관소는 단지 내 12개소가 있어 악취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청약 시 배치도를 활용하여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인접세대는 시각적인 사생활침해 및 냄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914, 919, 915, 918, 901, 905동은 차량진입로 및 주차램프에 면하여 있어 소음, 진동에 취약하고 주차장 지붕구조물에 의해 조망권 확보가 취약한 세대가 있으며, 저녁시간 차량이동시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불편 우려와 출입차 경광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903, 906, 907, 910, 913동의 지붕층에는 판매시설용 주방배기 환 및 탈취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수분양자 및 입주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903, 906, 907, 910, 913동 벽체 외벽에 주방배기 덕트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인접세대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수분양자 및 입주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무인택배 시스템은 901, 903, 906, 908, 911, 913동의 공용공간(필로티)에 설치되어 있음
- 913동 지하에는 비주거 기계실, 열교환실, 저수조 등이 위치하며, 917, 918동 지하에는 주거 기계실, 열교환실,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위치하며, 906, 907동 지하에는 비주거 저수조, 발전기실, 전기실, 냉각기실 등이 위치하여 장비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가 903, 904, 905, 908, 914, 915, 916, 917, 918, 919동 및 업무시설 지붕에 설치되어 공용부 전력으로 공급되며, 배선을 위한 케이블덕트시설이 옥상 바닥에 노출될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가동시 일부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주거용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1층 903, 905, 906, 916동 인근에 설치되며 업무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은 업무시설 1층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음.
- 주거용 TV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및 피뢰침은 901동 옥탑층에 설치되어 있음.
- 비주거용 TV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및 피뢰침은 업무동 옥탑층에 설치되어 있음.
- 1층 부속시설의 옥상은 개별입주민이 절대 사적으로 사용을 금하며, 이에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세대에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은 대표적인 평면유형으로 다른 타입과 평면은 다르나, 인테리어는 동일함
- 어린이 놀이터 및 운동시설물에 인접한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동 측의 비주거 시설 지상주차장 상부에는 옥상조경시설(시설, 포장, 식재)이 조성되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세대(904,905동)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 부지경계에 접하여 설치되는 (908, 909동 전면) 어린이공원 내에는 지상 2미터 내외의 공황철도 시설(환기구)이 위치하여 시야 간섭 세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공황철도 시설물로서 미관 등의 사유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시설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출차는 주출입구 1, 2는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나 부출입구의 출차는 우회전만 가능함.
- 903,904,905,908,909,910동 남측 녹지 지하로 공황철도가 906,907동 남측 단지경계 지하로 지하철 5호선이 운행되고 있어 생활의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906동,907동은 판매시설 및 인접한 업무시설 이용 등으로 소음, 사생활 침해로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곽은 생활타리로 조성되며, 헬스 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 지상 폐기물 보관시설 시설 주변 동은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부속정원,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아간에 보안등 불빛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출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광등 및 경보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불빛 및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차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지상 주차장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수거함 포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하기 바람(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랜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 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방법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아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이동통신용(스마트폰 등) 중계기 설치는 관계법령(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라 준공시 지하주차장, 옥외, 각동옥상등 중계기 및 안테나 설치가 완료되며,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은 현재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설계중이므로 미정임. 설계 완료후 각 이동통신사의 현장 실사후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1 입구에 차량출입통제용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주거/비주거 차량과 공용 사용되며, 914동과 915동 사이 주차램프 진입 후 지하1층에서 주거/비주거용 주차 차단기가 별도 설치되어 주거 및 비주거 용도별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919동과 918동 사이 주차램프는 주거용 차량만 진입 가능함.
- 주출입구2 입구에 주거/비주거용 주차 차단기가 별도 설치되어 주거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가능하며,비주거 차량은 지상주차장으로 진입가능함.
- 부출입구 입구에는 주거용 주차 차단기만 설치되어 904동과 905동 사이 주차램프로 주거용 차량만 진입 가능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비실 등의 외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 높이 제한(2.1M)에 따라 지하주차장 차량통행이 불가한 차량이 있음 (예) 화물차, 대형 SUV, 소형 컨테이너 트럭, 소형버스 등
- 1층에는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개의 코어에 각 1대씩 있으며, 단지 내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인용, 화물겸용으로 설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옥외용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인용 임)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상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전기료등 유지 ·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각 동호별 필로티 높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레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각동 저층세대는 야간 보안등,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동 주출입구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층에는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복리시설	휴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1동, 912동 사이 지상1층 [식재, 시설물, 포장]</li> <li>• 915~918동 사이 지상1층 [식재, 시설물, 포장]</li> <li>• 905동, 907동 사이 지상1층 [식재, 시설물, 포장]</li> </ul>
	주민공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9동 지상1층 (회의실, 휴게실, 다목적실)</li> <li>• 901동 지상1층 (게스트룸 1, 2)</li> <li>• 901동 지상1층 (바이크스테이션)</li> <li>• 주출입구1, 부출입구 DROP ZONE (스쿨스테이션 1,2)</li> </ul>
	경로당	• 908동 지상1층
	작은도서관	• 905동 지상1층 [문고포함]
	어린이집	• 902동 지상1층
	주민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2동 지상1층 (실내)</li> <li>• 908, 909동 ~ 916, 917동 사이 지상1층 (실외-식재, 시설물, 포장)</li> <li>• 907동 측면 지상1층 (실외-식재, 시설물, 포장)</li> </ul>
어린이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2~915동 사이 지상1층 어린이놀이터 1</li> <li>• 909~911, 916동 사이 지상1층 어린이놀이터 2</li> <li>• 902~904동 사이 지상1층 어린이놀이터 3</li> <li>• 901, 902동 전면 지상1층 유아놀이터</li> </ul>	

[단위세대]

- 아파트 단위세대 구조형식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인 무량판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단위세대 내부 일부 코너 부분 및 발코니 등에는 돌출된 부분(기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대평면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또한 서비스 영역인 발코니에 설치되는 보의 위치는 동일 타입 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전용 59㎡, 84㎡는 습식욕실로 되어있음.
- 전용 59㎡, 84㎡는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음.
- 아파트 다용도실(발코니2) 내 세탁기 설치 등으로 인한 단차 발생구간은 낙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바람.
- 59㎡, 84㎡세대 발코니 천정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며 그릴창 상부로 세대 급·배기를 위한 배관이 외부 노출되어 설치됨에 따라 미관저해, 발코니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59타입 이상의 부부욕실은 변기 및 세면기 구간에 배수구가 없는 형태로 일부 구매에 따라 바닥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84타입의 샤워부스는 안여닫이로 설치되어 있어 사용자에 따라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는 주방에 면한 발코니에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은 주방창호의 위치 상 크기 및 형태가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람.
- 팜플릿에 명기된 치수는 중심선 치수로서 건축법상 허용하는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단열공사 및 마감공사로 인해 근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코니가 확장된 세대의 확장벽면 일부는 단열공사로 인하여 단차가 형성되어 있으며 벽체마감으로 인해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실별 치수에는 천정 물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 계획하시기 바람.
- 세대 내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나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반드시 실제 크기를 확인해야 함.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 가구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최종 마감재(타일, 바닥재, 벽지 등)가 시공되지 않음 ① 화장실 천정 윗 부분은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상하부,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④ 주방 상부장 상부,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측면,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⑤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내부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시트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여건에 따라 발코니에 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천장 마감부위가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는 경량콘크리트벽체로 시공되어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경계벽 및 세대 내 실간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 벽식구조에 비해 소음전달이 클 수 있으며,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 시 안내)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등 인근세대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복구무는 입주자에게 있음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검용관이 시공상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전·후면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검용관이 시공상 오차 및 하부층, 최상층에 따라 통기관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세탁기 수전과 간섭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내 마감재(문선, 문틀, 아트월, 몰딩)등 시공 구간에 시공 특성상 타카핀이 불규칙 및 과도하게 사용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워싱등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 타입이라도 축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우수배수 선출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층간소음, 진동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3등급).
- 세대내의 대피공간에는 유사구조, 임의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이 불가함.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립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아트월 벽면에 TV를 포함한 중량물 고정시 경량벽체(ALC블록) 전용 양카를 사용하여야 함)
- 일부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또는 측면)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용 시스템 루버와 단차가 있어(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원활하게 환기시키기 위해) 실외기 하부에 높이 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으며, 시스템 루버에 최대한 근접하여 설치하여야함.
- 세대 내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발코니에 지정된 공간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며(발코니 외부에는 설치공간을 제공하지 않음), 에어컨 실외기 작동 시 그릴창호를 개방 후 사용해야 하며, 소음진동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고 또한 조망권, 일조권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이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출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된 경우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발코니 사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등 사용 시에는 수시로 사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 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일부 발코니 폭이 협소하여 다른 기능으로 사용 시 불편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 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및 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문짝(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시스템선반, 세탁실선반 등)은 설치 후 시간 경과상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실내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지상 3층부터 10층까지 모든 세대는 세대 내 대피공간에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완강기가 설치되며, 피난을 위한 디딤판으로 인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디딤판은 벽부형 또는 이동형으로 제공됨) - 904동59A, 905동59A, 908동59A, 910동59A, 911동59A, 911동84D, 912동59A, 912동84D, 913동84G 세대는 필로티 입구 캐노피 간섭으로 인하여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 시는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입주 초기에는 공사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세대현관문의 개폐방향은 피난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 세대통합단지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각종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나 화재 시 개방되어 사용이 가능함.
- 창호형태는 실제 시공 시 제작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된 플라스틱 창호 사용 시 심한 충격을 반복해서 가할시 변형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일부 세대 하부에 기계실, 펌프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급수, 급탕분배기는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옥실 천장내부 및 주방 등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내시경 홀이 설치됨.
-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등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 구매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매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욕실, 필로티, 욕실, 발코니 등)의 바닥 높낮이는 설계도면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각종 창호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 세대 내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의 합, 기타공용면적의 합, 계약면적 등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에 따라 다소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대지면적도 준공 시 확정측량 및 공부상 절차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 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의 기본사양 가전류 및 고용량 가전제품(전기인덕션 등)의 추가설치는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월패드에서 승강기를 호출할 수 있음.
- 세대 내 동체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어 있음.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에 동체감지기는 벽부형으로 설치됨.

## 기타 유의사항

- 광고, 홈페이지 홍보물 등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청약 시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 [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번기위치, 창호종류 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피난사다리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현장 답사 및 사전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포장,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평면도의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오기의 정정, 성능개선, 품질제고를 위해 경미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성능, 제품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마감재료 재질, 조경 등)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사이버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지구설계,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실내 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인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마곡지구 9단지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우수 친환경 건축물등급(그린2등급)으로 인증되었음.
- 대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발주처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준공 후 구조물 및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점용료는 입주자 부담으로 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세대 내부를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법개조를 인하여 화재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 내에 출입 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 촬영세대 및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오니,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 촬영세대 및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촬영세대 등, 호수에 대하여는 도배, 마루, 가구(59타입: 신발장 및 주방가구, 84타입: 신발장, 주방가구, 드레스룸 및 화장대), 도장, 목창호, 타일을 재시공할 예정이며, 상기 품목 이외에 대하여 교체요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 촬영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통신월패드, 현관도어폰, 욕실폰은 모양, 규격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모델하우스(대표평형만 촬영) 및 팸플릿 상 마감재 수준을 필히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본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의 동·호수는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므로 신청인이 주택의 방향, 평면 배치 등 아파트 배치 구조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는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를 입주예정자가 납부해야 함.
- 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잔금은 은행에서만 수납이 가능하며 관리사무소 및 주거복지센터에는 납부 불가함.
- 입주금(주택가격, 발코니확장비용 포함)의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비밀번호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입주청소 등 각종 개인목적을 위한 열쇠불출(비밀번호 수령)이 불가하며,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입주개시시작일 이전에는 열쇠불출(비밀번호 수령)이 불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하자관련 문의 및 하자접수는 입주지원센터 내 하자상담실(운영기간 : 입주개시 7일전~입주기간완료+30일) 및 하자119센터(운영기간 : 입주지원센터 종료 후 180일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후 하자접수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짐(단지여건에 따라 운영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지원센터 및 하자119센터 등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단지 내 공용공간(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운영되며, 운영기간 중 장소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은 청구 할 수 없음.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주택구입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주택가격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취득세는 계약자가 잔금 납부일과 건물(임시)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구청에 분양계약서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지참하시어 자진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함.
- 공유대지 지분등기는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확정시 공유대지 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첨 이후 공유대지지분 등기 시까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주소변경요청이라는 제목과 해당 주택 동, 호수, 연락처를 부기 기재하시어 팩스(02-3410-7514)송부하여 주시면 변경된 주소로 공유대지지분 이전등기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1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아래 공시내역은 실제 분양가격 기준으로 작성됨

(단위 : 천원)

항목	세분류	마곡지구 9단지		
		총금액	공급면적m <sup>2</sup> 당	
택지비(4개)	택지공급가격	279,442,198	2,835	
	기간이자	49,159,012	499	
	필요적경비	-	-	
	그밖의 비용	5,475,252	55	
	계	334,076,462	3,389	
공사비 (51개)	토목 (13개)	토공사	5,602,415	57
		흙막이공사	4,671,196	47
		비탈면보호공사	-	-
		옹벽공사	-	-
		석축공사	-	-
		우·오수공사	374,501	4
		공동구공사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
		도로포장공사	679,124	7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
		정화조시설공사	-	-
		조경공사	4,041,562	41
		부대시설공사	31,134	-
소 계	15,399,932	156		

공사비 (51개)	건축 (23개)	공통가설공사	6,308,217	64
		가시설물 공사	3,482,499	35
		지정맞기초공사	3,266,637	33
		철골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	47,483,558	482
		용접공사	-	-
		조적공사	6,914,958	70
		미장공사	3,252,823	33
		단열공사	3,083,648	31
		방수.방습공사	3,449,474	35
		목공사	1,452,331	15
		가구공사	1,362,364	14
		금속공사	2,375,092	24
		지붕및흙통공사	99,471	1
		창호공사	8,301,167	84
		유리공사	3,319,562	34
		타일공사	2,095,136	21
		틀공사	3,274,330	33
		도장공사	2,795,605	28
		도배공사	1,230,601	13
		수장공사	2,304,939	23
		주방용구공사	4,309,245	44
		그 밖의 건축공사	7,427,787	76
	소 계	117,589,444	1,193	
	기계설비 (9개)	급수설비공사	1,549,574	16
		급탕설비공사	1,346,071	14
		오·배수설비공사	3,913,148	40
		위생기구설비공사	2,285,961	23
		난방설비공사	5,630,523	57
		가스설비공사	797,577	8
		자동제어설비공사	588,076	6
		특수설비공사	3,109,189	31
		공조설비공사	-	-
	소 계	19,220,119	195	
	그밖의 공종 (4개)	전기설비공사	13,016,230	132
		정보통신공사	7,575,737	77
		소방설비공사	10,755,215	109
		승강기공사	2,158,078	22
		소 계	33,505,260	340
	그밖의 공사비 (2개)	일반관리비	4,920,424	50
		이윤	1,179,139	12
		소 계	6,099,563	62

간접비 (6개)	설계비	4,266,735	43
	감리비	6,145,744	62
	일반분양시설경비	-	-
	분담금 및 부담금	2,345,938	24
	보상비	-	-
	그 밖의 사업비성경비	18,864,231	192
	소 계	31,622,648	321
	그밖의비용 (1개)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더해지는 비용	20,066,221
분양가격 계		577,579,649	5,859

※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단위: 천원)

비용구분	금 액	
	마곡9단지	
택지비 가산비	기간이자	49,159,012
	연약지반 공사비	225,993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5,249,259
	계	54,634,264
건축비 가산비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	8,136,259
	주택성능등급	4,881,756
	법정초과복리시설	480,958
	친환경 주택설계	3,528,644
	인텔리전트 설비	3,038,604
계	20,066,221	

※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분양가격 기준으로 작성됨.

|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및 감정평가액 |

지구 및 단지명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 산술평균 총액(천원)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삼창감정평가법인	279,471,411

15 주택성능등급 표시 및 녹색건축(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마곡지구 공동주택(9BL)  
 2. 신청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3. 대지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4. 성능등급

가. 소용관련등급			다.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우수 이용	우수 이용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중수도 설치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나. 구조관련등급			라.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
수리용이성	선용부분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내구성	공용부분	★★	대중교통과의 근접성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과의 근접성	★★★★
	미대리벽 재사용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다. 환경관련등급			마.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민적률	★★	화재·소방	감시 및 경보설비	★
	자연지반 녹지율	★		재연설비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내화 성능	★
생태적기저	미옴 조성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기초대지의 생태학적 기저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피난설비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폐기물 최소화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생활용 쓰레기 저장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생활용 쓰레기 저장	★★			
	유요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	★★★★			
무수부하 절감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재활용 쓰레기 저장	★★			
	유요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활용 쓰레기 저장	★★			
	유요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활용 쓰레기 저장	★★			
	유요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활용 쓰레기 저장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인 2017년 12월 22일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마곡지구 공동주택(9BL)	인증번호	1-1031
건축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준공(예정)일	2019.10.08.	유효기간	사용승인일 까지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b>인증등급</b>	
층 수	지하2층, 지상16층	인증등급	우수(그린2등급)
연면적	242,036.34 m <sup>2</sup>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희림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그린2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토지이용 및 교통	62%
에너지 및 환경오염	89%
재료 및 자원	69%
물순환관리	53%
유지관리	69%
생태환경	53%
실내환경	69%

종합등급 ★★★★★

2017년 12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인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곡지구 9단지 |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

16 세대내 마감자재 목록

구분	항목	마곡지구 9단지	
		전용 59㎡	전용 84㎡
현관	현관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디지털도어록
	세대현관문	철재방화문	철재방화문
	바닥	폴리싱타일	폴리싱타일
	마루귀틀	인조대리석	인조대리석
	신발장	설치	설치
	현관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적용
거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원격검침
	벽지/천장지	친환경실크벽지	친환경실크벽지
	거실아트월	설치	설치
	거실아트월(네트워크 스위치)	설치	설치
	거실가구	미설치	미설치
	바닥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주방	벽지/천장지	친환경실크벽지	친환경실크벽지
	바닥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거실아트월-홀넷(필패드)	설치	설치
	주방벽	친환경 벽지, 도기질 타일	친환경 벽지, 도기질 타일
	주방가구	문짝 상판	PET마감 인조대리석
	주방폰	설치(라디오폰)	설치(TV폰)
주침실	걸레받이	무늬목 시트	무늬목 시트
	레인지후드	설치	설치
	가스콕탑	설치	설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설치
	싱크수전 절수기	설치	설치
	행주도마살균기	설치	설치
	가스오븐, 식기세척기	미설치	미설치
	바닥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화장대	해당없음	설치
	드레스룸 의류수납장	해당없음	설치
침실	침실문	문틀/문선 문짝	래핑 문틀 위 목무늬 시트마감 목재 여닫이문
	바닥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욕실	벽지/천장지	친환경실크벽지	친환경실크벽지
	벽	도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바닥	자기질 바닥타일	자기질 바닥타일
	천장	SMC 천정재	SMC 천정재
	세면기	벽부형	벽부형
	욕실폰(공용욕실)	설치	설치
	양변기	원피스형	원피스형
	욕조(공용욕실)	적용	적용
발코니	욕조수전(공용욕실)	싱글레바	싱글레바
	샤워수전(부부욕실)	세면기겸용 자바라형	해바라기형
	바닥	자기질 바닥타일	자기질 바닥타일
	외부창호(단창)	합성수지 창호/ THK22 칼라로이복층유리, Air	합성수지 창호/ THK22 칼라로이복층유리, Air
	발코니사시 (확장형 창호 이중창)	외부(상):THK22 칼라로이복층유리, Air 외부(하):THK25.76 칼라접합로이복층유리, Air 내부 : THK22 로이복층유리, Air	외부(상):THK22 칼라로이복층유리, Air 외부(하):THK25.76 칼라접합로이복층유리, Air 내부 : THK22 로이복층유리, Air
	발코니동작감지기	설치(1층, 2층 및 최상층)	설치(1층, 2층 및 최상층)
조명설비	세탁기수전	가로꼭지형	가로꼭지형
	가스계량기	원격검침	원격검침
	에어컨 냉매배관	설치(거실, 주침실)	설치(거실, 주침실)
	환기시스템	강제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강제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조명설비	식탁등	설치	설치
	각실 조명등기구	설치	설치
	현관센서등	설치	설치
	거실벽부등	미설치	미설치

마곡지구 9단지 |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1

17 사이버 견본주택

안내사항

- 마곡지구 9단지는 공고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 중으로 서울시민의 감염예방을 위해 견본주택 현장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양지해주시기 바람  
 • 공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주택을 실제 촬영한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전자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람.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전자팸플릿 조회]
- 사이버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 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은 전용면적별 일부 타입으로서 내부시설물은 분양 공고 시 제시된 내용(지구설계,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 외부 및 내부의 자재 및 형태)이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인허가 관청의 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될 시와 본 아파트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되며, 단지 및 평면유형별로 색상과 형태가 다소 다를 수 있음.
- 마곡지구 현장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위치 안내



**교통편**

- 자가용 : 네비게이션에 '강일교회' 검색 후 건너편 '강서구 마곡동 744' 검색
- 대중교통(지하철과 버스)  
 -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⑦번 출구  
 버스 이용 (6631, 6645, 6647, 6712) → 공황중학교 하차  
 - 지하철 5호선 마곡역 하차 ①번 출구 → 도보 이용(15분 소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견본주택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 건설현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방문은 불가 합니다.



**교통편**

- 자가용 : 네비게이션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검색
- 지하철  
 - 3호선 대치역 하차 ⑩번 출구(공사 지하1층으로 연결)  
 -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하차 ④번 출구(도보 10분 거리)  
 • 연계버스 : 강남 01, 강남 05, 3413, 4412 대치역 하차  
 ※ 청약 신청장소 주변 주차여건이 매우 협소하오니, 방문 시 급격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분양일정 안내

구분	일정	신청장소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	2020.02.26.(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경향신문, 한겨레 ※ 사이버건본주택 : 2020.02.26.(수) 13시 이후 예정	
특별공급 청약접수	기관추천, 철거민 (마곡지구 및 회현 제2시민아파트)	2020.03.09.(월)~03.10.(화)	인터넷청약 (09:00~17:30)
	다자녀 특별공급	2020.03.0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0.03.10.(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20.03.10.(화)	
일반공급 청약접수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0.03.10.(화)	인터넷청약 (08:00~17:30) 또는 가입은행 청약 (09:00~16:00)
	제1순위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2020.03.16.(월)	
	제1순위 (서울시 1년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	2020.03.17.(화)	
	제2순위	2020.03.18.(수)	
당첨자 및 등·호수배정 발표	2020.03.25.(수) 17: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서비스(APP설치)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2020.03.30.(월)~04.01.(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 게시	2020.05.21.(목) 17: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계약기간	2020.06.02.(화)~06.04.(목)	·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중도금 1차 납부기한	2020.07.17.(금)		
중도금 2차 납부기한	2020.09.25.(금)		
중도금 3차 납부기한	2020.12.04.(금)		
입주자사전점검(예정)	2021.01.16.(토) ~ 2021.01.17.(일)		
입주개시(예정)	2021.02.16.(화) ~ 2021.04.16.(금)		

※ 상기 분양일정은 건축공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유형별·순위별 지정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의 600%에 달할 경우 1순위(서울시 1년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 및 2순위는 더 이상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단속강화 및 처벌규정

최근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구성하여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결혼 등에 의한 불법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환수하는 등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Q. 청약통장을 사고 팔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례]

평소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꾸준히 돈을 부어왔던 A씨.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약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포기하던 차에 거리 전단지에서 청약통장을 산다는 업자에게 전화해 웃돈을 받고 통장을 팔게 되는데...

☞ 청약통장 거래는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행위 이익의 3배 금액이 3천만원 초과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내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또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원인무효로 인해 소유권이 환수되므로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하게 됩니다.

Q.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도 될까요?

[사례]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거래계약을 맺은 A씨.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받아 명의변경을 기다리는 동안 '프리미엄'이 올라 마음을 졸이게 되는데...

☞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의 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는 주택법 6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며 주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거래 및 분양권 불법전매에 관한 처벌규정

■ (입주자 저축증서 거래·알선 금지)청약통장의 거래,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 위반자에게는 ① 주택공급계약 취소,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행위 이익의 3배 금액이 3천만원 초과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③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제한

※ 근거 규정 : 「주택법」 제65조, 제10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 (주택 불법전매 금지)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거래, 알선에 대한 처벌규정

- 위반자에게는 ① 주택공급계약 취소,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규정 : 「주택법」 제64조, 제101조